

2021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초등(사서·상담)·유치원·특수(유치원)·특수(초등)·보건·영양·교육전문직원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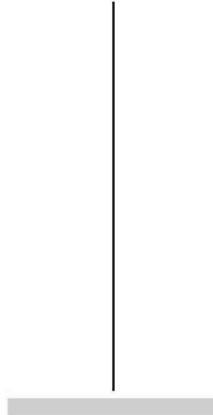
초등(사서·상담)

제 1 장 총칙	3
제 2 장 신규 채용·계약제 교원 임용·특별 채용	5
제 3 장 승진	6
제 4 장 전직	7
제 5 장 전보	8
제 6 장 국·공립학교 및 시도 간의 교류	13
제 7 장 수석교사	15
부 칙	17
> <표 1> 인사구역 및 동일 직위 근속연한	27
> <표 2> 가산점 평정표	28
> <표 3> 초등(유치원)학교 교사·교(원)감 경력점 조건표	30



유치원

제 1 장 총칙	33
제 2 장 신규 채용 및 계약제 교원 임용	35
제 3 장 승진	35
제 4 장 전직	36
제 5 장 전보	36
제 6 장 시도 간의 교류	41
제 7 장 수석교사	42
부 칙	44
> <표 1> 인사구역 및 동일 직위 근속연한	53
> <표 2> 가산점 평정표	54



특수(유치원)

제 1 장 총칙	59
제 2 장 신규 채용 및 계약제 교원 임용	61
제 3 장 승진	62
제 4 장 전직	62
제 5 장 전보	63
제 6 장 국공립학교 및 시도 간의 교류	67
부 칙	68
> <표 1> 인사구역 및 동일 직위 근속연한	69
> <표 2> 가산점 평정표	70



특수(초등)

제 1 장 총칙	75
제 2 장 신규 채용 및 계약제 교원 임용	77
제 3 장 승진	78
제 4 장 전직	78
제 5 장 전보	80
제 6 장 국공립학교 및 시도 간의 교류	83
부 칙	85
> <표 1> 인사구역 및 동일 직위 근속연한	93
> <표 2> 가산점 평정표	94



보건

제 1 장 총칙	99
제 2 장 신규 교사의 배정과 임용	100

제 3 장 초·중·고등학교 간 전보	101
제 4 장 전보	101
제 5 장 국·공립학교 및 시도 간의 교류	104
부 칙	106
> <표 1> 인사구역 및 근속연한	114
> <표 2> 가산점 평정표	115
> <표 3> 보건교사 경력점 조건표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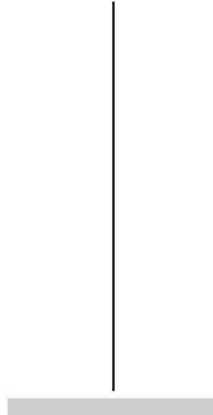
영양

제 1 장 총칙	121
제 2 장 신규 교사의 배정과 임용	122
제 3 장 전보	123
제 4 장 국·공립학교 및 시도 간의 교류	126
부 칙	128
> <표 1> 인사구역 및 근속연한	132
> <표 2> 가산점 평정표	133









교육전문직원

제 1 장 총칙	137
제 2 장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137
제 3 장 교육전문직원의 전보	140
제 4 장 교육전문직원의 전직	140
부 칙	143





각종 서식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 평정표	151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 명부	152
 연수 성적 평정표	153
 경력 평정표	154
 전직 원서	155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추천 조서	156



참고 자료

 동일 시·군 지역 내 급지별 학교 명단	159
 타 시·군 전보 내신조사서 희망지역 표기 자료	162

초 등(사서·상담)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제 법규에 의한 신규 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범위)

- ① 이 기준은 본 도의 초등 교원(사서·상담교사)과 교육전문직원에 적용한다.
- ②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기준을 준용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지원청 교원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 ③ 인사구역이 '나', '다', '라' 급지가 있는 통합 시·군의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본 도의 인사구역 급지에 구애되지 않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급지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2 조의 2(용어 정의)

이 기준에서 '전보'라 함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⑨항과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만 소지한 자가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 기관(초등학교↔특수학교)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제 3 조(전보의 시기)

정기 전보는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한다.

단, 수석교사, 교사는 3월 1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10.23.>

제 4 조(비정기 전보)

- ① 수석교사, 교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최저 근무연한 이내 일지라도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2.10.23.>
단, 5, 6, 7, 8호는 전보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8호는 본인이 요청할 경우 인사권자 소속 인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10호는 본인의 희망과 전보권자의 승인에 의하며, 3호 해당자로 전보된 자는 2년 이내 전 근무지에 가급적 전보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5.25.> <개정 2019.7.8.>



1. 정원의 변경, 승진, 강임의 경우
 2. 직위 해제 후 복직된 자
 3. 징계 처분을 받은 자
 4. 감사 결과 인사 조치 지시된 자
 5. 당해 학교에 재직 시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6.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 단, 이 경우 학교장은 전보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7.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①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8. 기타 인사 쇄신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9. 전보권자를 달리하는 경우(시·군 관내 전보 제외)
 10.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11. 동일교에 근무하는 부부교원 및 직계 존·비속
 12.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②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최저 근무연한 이내 일지라도 전보할 수 있다. 단, 10호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다.
1. 직위 해제 후 복직된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행정처분으로 인사조치가 결정된 자
 4. 당해 학교에 재직 시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5.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
 6. 학교경영이 부실하거나 중대한 민원을 야기한 자
 7. 기타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8. 교육공무원법 제 10조의3 제①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9.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10.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 ③ ①항 2~8호 해당자와 ②항 1~8호 해당자는 비경합지로 전보한다.



- ④ 학교장은 학교 운영상 교원의 전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직권 내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비경합지에 내신하여야 한다.

제 5 조(인사구역 및 근속연한)

동일 직위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생활 근거지 및 희망지 전보로 교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인사구역 및 근속연한을 정하여 교원의 순환 전보를 실시한다.

제 6 조(전보 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

전보 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은 2월 말일, 8월 말일 현재로 하며, 전보 연한의 계산에서 1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0.24.>

제 2 장 신규 채용·계약제 교원 임용·특별 채용

제 7 조(교사 신규 채용자 배정과 임용)

- ① 신규 채용자는 초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명부에 의거 임용 예정 인원의 3배 수 범위 내에서 가급적 고순위자 순으로 배정한다.
- ② 신규 채용자의 교육지원청 배정은
 1. 신규로 채용되는 자 중 '성적 우수자'(임용 고시 상위 3% 이내)는 본 도 인사 구역의 '가' 급지 또는 희망지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2. 교사 전보 시에는 시·군별 결원의 일정 비율을 신규 채용자로 배정할 수 있다. 단, 학기 도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교사의 신규 임용은 교육감이 배정한 자를 교육장이 임용한다.

제 8 조(계약제 교원의 임용) <개정 2011.10.24.>

- ① 계약제 교원은 초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학교장이 임용한다. 단, 희망자가 없는 경우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교과전담)를 임용할 수 있다.



- ② 단급 분교장 보조 강사는 초등학교 교원 자격증 소지자 및 그 자격 기준에 달한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학력 인정자 포함)중에서 학교장이 임용한다.

제 9 조(특별 채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1. 폐교 또는 학급 감축으로 과원이 되는 사립학교 교원
2. 교육감이 교육 시책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이사장 (또는 설립자)이 추천하는 교원

제 3 장 승진

제 10 조(승진)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하되 가급적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제청)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우선 임용(제청)할 수 있다.

1. 교장 승진은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 교감 승진은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내인 자
2. 교감 승진 후보자 명부 기 등재자<개정 2011.10.24.>

제 11 조(배치)

승진 임용자는 본 도 인사구역의 '가' 급지에는 배치하지 아니한다.

단, '가' 급지 전입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보직교사의 임용)

보직교사는 학교장이 임용한다. 보직교사 임용에 관한 기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3.10.17.>



제 4 장 전 직

제 13 조(특수학교 전직)

초등학교 교원과 특수학교 교원의 전직 임용은 해당 학교급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소속 기관장의 내신을 받아 전직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임용(제청)한다.

제 14 조(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

교원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할 때에는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의 해당 기준에 따라 임용(제청)한다.

- ① 장학(교육연구)관은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단, 현직 교장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시키고자 할 때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5.1.28.><개정 2019.11.20.>
- ② 장학(교육연구)사는 교감 또는 교감 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천으로 소정의 전형을 거쳐 임용한다.
- ③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 기능, 경험이 필요한 분야의 장학(교육연구)사는 해당 분야의 자질과 능력 및 교육감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전형을 거쳐 임용한다.
- ④ 교장 및 교육전문직원 경험이 있는 자의 교육전문직원 전직 임용은 ②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교장의 전직 시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⑤ 현직 교원의 교육전문직원 임용은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하되 가급적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한다.
- ⑥ 교육지원청 장학사 및 직속 기관의 장학(교육연구)사 임용 절차는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기준」에 의한다.

제 15 조(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 전직)

- ①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경우 5년 이상,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자는 교감, 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다.<개정 2012.10.23.>
- ② 전 항의 「교육전문직원의 전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칙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기준」에 의한다.



제 5 장 전 보

제 16 조(교감·교사의 인사구역 및 근속연한)

- ① 교감·교사의 인사구역 및 근속연한은 <표 1>과 같다.<개정 2019.7.8.>
- ② 도서·벽지학교, 준벽지학교 및 교육실습협력학교 근무에 관한 사항은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해당 지역 교육장이 정하되 교육실습협력학교 근무 기간은 동일교 근속 기간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10.17.>
- ③ 정원의 변경으로 인해 부득이 전보된 자는 전임교의 근무 경력을 현임교(동일교)의 근속 경력으로 볼 수 있다.
- ④ 국립학교·특수학교, ‘가’, ‘나’ 급지의 도서·벽지학교, 준벽지학교 근무 경력은 당해 급지의 근속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준벽지학교의 제외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7.10.><개정 2018.7.17.>
- ⑤ ‘가’, ‘나’ 급지의 특수학급 담임교사, 순회교사, 타 시설 파견교사의 근무 경력 중 1년간은 당해 급지의 근속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 특수학급 담임교사는 2012.2.29.까지 실적 인정)<개정 2011.10.24.><개정 2017.7.10.>
- ⑥ 휴직 기간 및 파견 근무 기간은 근무 기간(시·군)에서 제외한다.

제 17 조(교감·교사의 순환 및 희망 전보)

- ① 시·군 및 학교 간 전보는 <표 1>과 같이 하되, 동일 학교 근무 기간은 1년 이상 5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개정 2012.10.23.>
- ② 인사구역 시·군 간 전보는 <표 1>과 같이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시·군 간 전보는 실정에 따라 그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가’ 급지 근속연한 만료자는 ‘나’, ‘다’, ‘라’ 급지에 전보한다.
- ④ 익년도에 급지 간 순환 전보 대상자는 학년도 중에 관내 전보할 수 없다.
- ⑤ 교감은 직무수행 능력, 학교평가, 장학 실적, 경력, 청렴성, 학부모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한다.
- ⑥ 파견근무 확정자는 전보하지 아니한다. 다만, 만기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5.25.><개정 2017.7.10.>



제 18 조(교감·교사 전보 서열 명부 작성)

- ① 교사·교감의 시·군 전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점, 가산점을 합산하여 남·여를 통합하여 희망 교육지원청별로 전보 서열 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7.7.10.>
- ② 도 인사구역 급지 경력점은 최근 4년 간의 근무기간 중 <표 1>의 급지에 의거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한다. 다만, '나', '다' 급지 근무자의 초과 경력은 4년에 한하여 1년마다 1점을 가산하되 현임 시·군의 근속 초과 경력에 한한다. 타 시·도 전입자의 전임지 인사구역 급지 경력점은 본 도의 '가' 급지에 준하고, 초과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5.25.>

인사구역급지	가	나	다	라
1년간 경력점	6	7	8	9

- ※ 휴직 기간 또는 파견 기간이 경력점 평정 기간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평정 기간 직전의 실제 근무 기간에서 이월하여 당해 평정 기간에 산입한다.
단, 도 단위 교육행정, 연구, 연수, 수련 기관 파견 근무자의 파견 기간은 당해 학교 근무 경력으로 산입할 수 있다.

- ③ 가산점은 <표 2>에 의거 최근 4년 간 현 인사구역에서 거양한 실적과 표창에 한하되 우수조건을 포함한다. 단, 휴직 기간 또는 파견 기간이 평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평정 기간 직전의 실제 근무기간에서 이월하여 당해 평정에 산입한다.(휴직 기간, 파견 기간 삽입은 2015.3.1. 이후 실적)<개정 2014.10.13.>
<표 2> 가산점 평정표 중 근무 실적의 경력 계산은 학년도 기준으로 하고, 근무 실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7, 18호는 6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한다. 단, 1호의 경우 교육지원청 이상 지정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2015.3.1. 이후 매월 0.05점), 교과전담교사 6개월 미만일 경우 월마다 0.1점을 인정한다.<개정 2014.10.13.><개정 2017.7.10.>정보화 관련 자격 및 한국사능력검정 자격은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인정하며, 수업명사 자격은 취득 후 10년간 가산점을 부여한다. 근무실적 7호 교과전담교사 실적과 수업명사 자격 관련 개정 내용은 2014.3.1.이후 적용한다.<개정 2012.10.23., 2013.10.17., 2015.5.15.><개정 2019.7.8.>
- ④ 인사구역 급지에 대한 경력점은 최근 4년에 한하여 연 단위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



- ⑤ 전보 서열 명부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현임교 장기 근무자
 2. 시·군 경력점 상위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개정 2017.7.10.>
- ⑥ 교육지원청 관내 급지 및 학교 간의 전보는 교육장이 행하되, 도서·벽지 학교로 전보 시 통합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시행한다.<개정 2017.7.10.>

제 19 조(교감·교사의 전보 우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전보할 수 있다.

- ①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공적으로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상장 또는 지도상 수상자 및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획득 유공 지도교사
이 경우 동일 지역 결원 인원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결원 인원이 1명일 경우 전보서열 순위에 의한다.<2014.3.1.이후 적용, 개정 2013.10.17., 2014.10.13.><2016.2.29.이전 실적>
- ② ‘가’ 급지 근무 교사 중 동일 급지 간 전보 희망자
이 경우, 동수 교류를 원칙으로 하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전보할 수 있다.
- ③ 체육 진흥 등 교육 시책 추진상 당해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 경우 ‘가’ 급지에 전보된 자가 3년 이내, 지도 실적이 부진할 때에는 비경합지 학교로 전보 조치할 수 있다.
- ④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과원이 발생한 경우
- ⑤ 연구(도 지정 이상, 교육실습협력)학교의 과제 해결 및 그 외 학교의 경영상 꼭 필요한 특수 영역의 우수 교사로서 교육장이 요청하고 전보권자가 승인한 자
- ⑥ 매년 2월 말 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교원의 경우 본인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생활근거지(1년 이상 거주), 배우자의 직장(1년 이상 재직) 또는 생활근거지(1년 이상 거주)로 이동시 해당지역 전보자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만 2세 미만 자녀에는 2월 말일까지의 출산예정 자녀를 포함한다. 단, 전보 서열 명부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개정 2011.10.24., 2012.10.23., 2018.7.17.>



1. 자녀 수가 많은 교원
2. 전보 서열 명부 고점자 순(인사관리기준 제18조 ①항)
3. 2호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인사관리기준 제18조 ⑤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 20 조(교감·교사의 전보 유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과 소속 교육장의 요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전보권자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1.10.24., 2012.10.23.>

단, 3호 및 5호 해당자는 2회까지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9.7.8.><개정 2020.7.13.>

1. 도 지정 이상의 연구학교 근무자로서 연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학교의 교감, 연구 부장(연구 주무) 교사
2. 정년 퇴임 1년 이내인 교감, 교사
3. 전국소년체육대회 금메달 획득 지도교사 및 단체 종목 우승 학교 교감
4. 학교 경영상 꼭 필요한 특수 영역의 우수 교사
5. 행복(나눔)학교 운영상 꼭 필요한 핵심 교사(2명 이내)<개정 2016.5.25.>
<개정 2019.7.8.>
6. 다자녀교원(3자녀 이상) 중 미취학 아동이 있는 교감, 교사<신설 2018.7.17.>

제 21 조(교사 초빙)

- ① 초빙교사 임용은 당해 학교 교사 총 정원의 20%이내(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 50%이내)로 한다.(단, 도서벽지 및 준벽지학교를 제외하고, 교장공모제 학교는 운영지침에 따른다.)<개정 2011.10.24., 2014.10.13.>
- ② 초빙교사 대상은 동일 교육지원청내 교사에 한한다.
- ③ 초빙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지역근무연한에 포함한다.
- ④ 위 사항 이외의 초빙교사 임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 22 조(교장의 근속연한)

- ① 도서·벽지 학교에 전입을 희망하는 자가 없을 때,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계속 근무를 허용할 수 있다.
- ② 국립학교, 특수학교, '가', '나'급지의 도서·벽지 학교 근무 경력은 당해 급지의 근속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통합학교로 전보된 자는 전임교의 근무경력을



현임교(동일교)의 근속 경력으로 볼 수 있다.

제 23 조(교장의 순환 전보 및 희망 전보)

교장 전보는 학교 경영 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해 시행한다.

- ① 학교 간의 전보는 <표 1>과 같이 동일학교, 동일 직위 근속 1년 6개월 이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직무수행 능력, 학교평가, 장학 실적, 경력, 청렴성, 학부모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한다. 단, 인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본인의 희망과 교육장의 내신에 의해 1년 이상자도 전보할 수 있다.
- ② 동일 교육지원청 내 '가' 급지 학교 간의 전보는 1회에 한한다.
- ③ 인사구역 및 시·군간 전보는 <표 1>과 같은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시·군간 전보는 실정에 따라 그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삭제 <개정 2020.7.13.>
- ⑤ 도서·벽지 동일 학교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자는 본인의 희망 또는 인사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학교로 전보한다.
- ⑥ 익년도에 급지 간 순환 전보 대상자는 학년도 중에 관내 전보할 수 없다.
- ⑦ 본 도 '다', '라' 급지의 비 경합 학교에 한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동일교 근속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유고자는 제외한다.
- ⑧ 전국소년체육대회 성적 우수자는 가급적 우대한다.

제 24 조(교장의 전보 유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과 교육장의 내신에 의하여 전보권자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단, 3호 해당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1. 도 지정 이상의 연구·시범학교 근무자로서 연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학교의 교장
2. 정년 퇴임, 교장 중임 만료 1년 이내인 교장
3. 전국소년체전 단체 종목 우승 학교장

제 25 조(공모교장)

공모교장 임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하되 공모교장으로 근무한 기간의 당해 급지 근속연한 산입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제 26 조(교육전문직원의 전보)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① 동일 근무처에서 1년 이상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희망, 당해 교육지원청(직속 기관) 업무 추진과 인사 조직 실정 등을 고려하여 전보한다.
- ② 동일 근무처에서 4년 이상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는 전보한다. 단, 2012.3.1.자 이후 임용한 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소속 기관장의 전보 유예 신청과 (본인의 희망서 첨부) 전보권자의 승인으로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제 6 장 국·공립학교 및 시도 간의 교류

제 27 조(국·공립 학교 간의 교류)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국립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용하고,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교육감의 3배수 추천에 의거 국립학교장이 임용한다.

- ①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될 자의 급지 및 가산점 인정은 초등 인사관리 기준에 준하여 산정하고 희망지역의 전보 서열명부에 산입시킨다. 단, 근속연한 만기 근무자는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3.10.17.>
- ② 국립학교 전입자 중 ‘가’ 급지 근무자는 ‘가’ 급지 근무 만료 전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제 28 조(타 시도 간의 교류)

- ① 아래 표에 의거 서열 명부를 남·여 구분 없이 작성하여 고순위자 순으로 교류한다.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1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개정 2018.7.17.><개정 2019.7.8.> ○ 다음 법률 해당자로서 전출 희망 사도에 가족(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이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부 별거 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2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 희망 사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 (장애인: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 기존 1순위인 전출 희망 사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는 이 항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0.3.1.자 까지 1순위로 본다.<개정 2019.7.8.> ○ 별거 부부 3년 이상자 • 전출희망 사도내에 별거 중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자 ○ 자녀 3명 이상 부양자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자녀 3명 이상 자 ○ 노부모 봉양자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사도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1년 이상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부 별거 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 부부 별거 기간이 같은 경우 노부모 봉양자 우선
3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거 부부 3년 미만자 ○ 근무희망(생활 연고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부 별거 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 ② 교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우선 전보할 수 있다.
- ③ 동수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전출 희망지 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교원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전출을 명할 수 있다. 단, 일방전입을 요구하는 교육감이 별도의 일방전입 기준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해 내신자를 통보할 수 있다.
- ④ 전출 대상자 요건과 선정 순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3.10.17.>

제 29 조(교환(파견) 근무)

- ① 교육의 지역 간, 기관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의 고충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 상호 1:1 동수 원칙으로 파견 근무토록 할 수 있다.
- ② 파견 요건 및 파견 대상자의 선정 등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 7 장 수석교사

제 30 조(수석교사의 인사구역 및 근속연한)

- ① 수석교사의 인사구역 근속연한은 <표 1>과 같다.
- ② 당해급지의 근속연한은 수석교사 임용일부터 적용한다.<개정 2016.5.25.>

제 31 조(수석교사의 순환 및 희망 전보)

- ① 시·군 및 학교 간 전보는 <표 1>과 같이 하되, 수석교사의 동일학교 근무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시·군간 전보는 실정에 따라 그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5.25.>
- ② '가' 급지 근속연한 만료자는 '나', '다', '라' 급지에 전보한다.
- ③ 수석교사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 할 경우는 본인의 희망과 교사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관내 또는 타시·군으로 전보한다.

제 32 조(수석교사의 배치)

- ① 수석교사는 초등학교에 1인을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단, 5학년 이하, 학생 수 100명 이하의 학교는 미배치 할 수 있다.
- ② 교육지원청의 수석교사 배치는 관내 급지, 학교 간의 전보, 학급 수를 고려하여 교육장이 행한다.

제 33 조(서열명부 작성)

- ① 수석교사는 지역별로 정원을 배정하고, 수석교사 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원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수석교사의 시·군 전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점에 따라 남·여를 통합하여 희망 교육지원청별로 전보서열 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7.7.10.>
- ③ 도 인사구역 급지 경력점은 최근 4년간의 수석교사 근무기간 중 <표 1>의 급지에 의거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한다.



인사구역급지	가	나	다	라
1년간 경력점	6	7	8	9

④ 전보서열 명부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현임교 장기 근무자
2. 시·군 경력점 상위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개정 2017.7.10.>



부 칙 (2000. 12. 07. 초등 13060-222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 조치)

- ① 이 기준 시행 이전의 방침에 의하여 '94. 2. 28.이전 특수학교에 진출된 교감, 교사는 인사 급지 간 순환 전보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초등학교장에 한해 '93. 2. 28.이전에 인사 조치된 자의 동일 급지 근무연한은 '94학년도 인사 관리 지침 경과 조치 ③항에 의거 '가' 급지 - '99. 2. 28, '나' 급지 2001. 2. 28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가' 급지에서 '나' 급지로 변경된 지역의 근무연한은 '나' 급지 계속 경력으로 본다. 다만, '나' 급지에서 '다' 급지로 변경된 지역 근무자는 급지 간 순환 전보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조(시행안 예고)

〈표 2〉의 전보 가산점 평정표 중 일부를 시행(안) 예고(〈표 2〉의 '비고'란 참조)와 같이 조정하여 200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29. 인사위 12100-282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23. 인사위 12100-294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4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3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대용부설학교의 근무 기간은 동일교 근속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교사·교감의 시·군 전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점, 근무 성적점, 가산점을 합산한 후 남·여를 통합하여 희망 지역 교육청별로 전보 서열 명부를 작성한다.
- ③ <표2> 연구 실적의 5. 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자에 교원 정보 활용 능력 인증자를 추가하고 해당자에게 가산점 0.5를 부여한다.

부 칙 (2003. 11. 18. 인사위 12110-307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5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4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교사·교감의 동일직 급지별 근속연한에서 ‘나’ 급지 교사 12년과 교감 10년, ‘가, 나’ 급지 통산 교사 12년, 교감 10년을 폐지한다.
- ② <표2> 연구 실적의 5. 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자에게(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기술자격을 의한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0.3을 부여한다.
- ③ <표2> 연구 실적에 영어 능력 시험 성적을 추가하고 영어 능력 시험 성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가산점 0.3을 부여한다.
 - TOEFL 시험 성적 PBT 503이상, CBT 177이상
 - TOEIC 시험 성적 595이상
 - TEPS 시험 성적 498이상



부 칙 (2004. 11. 29. 인사위-324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6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5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전국소년체육대회 단체, 단일 종목의 금메달 획득 유공 지도 교사는 우선 전보한다. 이 경우 당해 급지의 근무연한은 수상일로부터 기산한다.
- ② 전국소년체육대회 성적 우수학교 교장이 전보를 희망할 경우 가급적 우대한다.
- ③ 전국소년체육대회 금메달 획득 지도 교사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 ④ <표2>에서 학교 과제 해결 및 직접 학생을 지도한 실적이 인정되는 타 부처 장관 표창은 1.0의 전보 가산점을 부여한다.

부 칙 (2005. 11. 23. 인사위-2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7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6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표2>의 연구 실적에서 수업명사로 위촉된 자는 1.0의 전보 가산점을 부여한다.

부 칙 (2006. 11. 20. 인사위-26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8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7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특수학급 통합학급 담임(특수교육 대상자로서 장애인 등록 복지카드 1~3급 소지 학생)에게 0.5의 전보 가산점을 부여한다.
- ② 교감·교사의 순환 및 희망전보에서 시·군 및 학교 간의 전보는 <표 1>과 같이 동일 학교 근무 1년 6개월 이상 5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③ 교장의 순환 및 희망전보에서 동일 교육청 내 학교 간의 전보는 <표 1>과 같이 동일 학교, 동일 직위 근속 1년 6개월 이상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인사상 부득이 한 경우는 본인의 희망과 교육장의 내신에 의해 1년 이상인 자도 전보할 수 있다.
- ④ 제28조 ①항(타 시·도 간 교류)서열명부 작성 시에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자녀 3명 이상 부양자는 다음 표와 같이 2순위에 부여한다.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2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거 부부 3년 이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희망 시도내에 별거 중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자 ○ 자녀 3명 이상 부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자녀 3명 이상 자 ○ 노부모 봉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시도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부 별거 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부부 별거 기간이 같은 경우 3자녀 부양자, 노부모 봉양자 순

부 칙 (2007. 11. 01. 인사위-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30. 인사위-1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03. 인사위-7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11학년도 시행안 예고)

2010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제18조 ④항 <표 2>가산점 평정(표창): 직속기관장 표창(0.7점). 2010.3.1. 이후 실적
- ② 제18조 ④항 <표 2>가산점 평정(근무실적): 6학년 담임(6개월 마다 0.25점). 2010.3.1. 이후 실적.
- ③ 제18조 ④항 <표 2>가산점 평정(근무실적): 통합학급 담임(특수교육대상자로서 복지카드 1~3급 소지 학생의 담임)을 통합학급담임(특수교육대상자)으로 확대 시행. 2010.3.1. 이후 실적부터
- ④ 제28조(타 시·도 간 교류) ①항의 표 1순위는 아래 표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1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 희망 사·도내에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1급 장애인 부양 (장애인: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 다음 법률 해당자로서 전출 희망 사·도에 가족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이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부 별거 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부 칙 (2010. 11. 04. 인사위-10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12학년도 시행안 예고)

2011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제18조(교감·교사 전보 서열 명부 작성) ④항 <표2> 가산점 평정은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종별	평 정 대 상	가산점	적용대상	비 고
근 무 실 적	1. ~ 2. (현행과 같음) 3. 교육방송평생(사회)교육, 기초학력책임지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역 중심학교, 지역 교육청 지정 협력학교 근무자 단, 기초학력책임지도, 다문화가정자녀 교육 지역중심 학교는 2009.3.1. 이후 실적, 교육과정 운영 지역중심 학교는 2011.3.1. 이후 실적	0.2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 5. (현행과 같음) 6. 2년간 원어민 영어교사 코-티처(6개월마다) 단, 지자체 지원 원어민 영어교사 코-티처는 2011.3.1. 이후 실적 7. ~ 8. (현행과 같음)	0.2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② 제28조(타 시·도 간 교류) ①항의 표는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종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1 순위	○ 전출 희망 사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1급 장애인 부양 (장애인: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순위	○ (현행과 같음) ○ 노부모 봉양자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사도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1년 이상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현행과 같음)



부 칙 (2011. 1. 31. 인사위-2208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24. 인사위-5109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23. 인사위-23913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0. 17. 인사위-761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13. 인사위-4024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17학년도 시행안 예고)

2015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제18조(교감·교사 전보 서열 명부 작성) ④항 <표2> 가산점 평정(근무실적)은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종별	평정대상	가산점	적용대상	비고
근무 실적 (전)	12.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 체육대회 동계대회 입상 유공자 (교감 및 지도교사: 합류교 포함) 13. 초·중학교 종합체육대회 입상 유공자(도대회) <2014.3.1.이후 적용>	1.0 0.5	전교원	4년간 누가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개정 2013.10.17.>
근무 실적 (후)	12.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동계대회 입상유공자(교감 및 지도교사 포함: 합류교 포함) - 금메달 - 은메달 - 동메달 13.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공적으로 전국 규모의 대회 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상장(지도자상)수상자 (12, 13호 2016.3.1. 이후 실적부터 적용) 14. 초·중학교 종합체육대회 입상 유공자(도대회)	5.0 2.5 1.5 5.0 0.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12, 13호는 2016.3.1.이후 실적부터 적용하며, 2017.3.1. 전보부터 시행함

부 칙 (2015. 1. 28. 인사위-2015-2877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5. 15. 인사위-2015-1714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5. 25. 인사위-2016-18630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0. 인사위-2017-02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17. 인사위-2018-03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21학년도 시행안 예고)

2019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2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제18조(교감·교사 전보 서열 명부 작성) ④항 <표2> 가산점 평정(근무실적)은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종별	평정대상	가산점	적용대상	비고
근무실적(전)	15. 초·중학교 종합체육대회 입상 유공자(도대회)	0.5	전교원	4년간 누가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근무실적(후)	15. 2년간 초·중학교 종합체육대회 입상 유공자(도대회)	0.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부 칙 (2019. 7. 8. 인사위-2019-05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20. 인사위-2019-07호)

제 1 조(시행일)

2020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① 제14조(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 ①항 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1]의 기준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단, 현직 교장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시키고자 할 때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1.20.>



부 칙 (2020. 7. 13. 인사위-2020-06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 1〉

인사구역 및 동일 직위 근속연한

급지	인사구역		동일 직위			근무연한		
	교장인사구역	교감, 교사인사구역	동일교 근속연한			동일 급지별 근속연한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가	창원(동), 마산(동), 진해(웅천, 웅동지역 제외) 진주시(동) 통영시(동) 사천시(동) 김해시(동)	창원시(창원) 진주시	4년 3년 (2013.3.1. 임용자 부터 적용)	5년 범위 내	5년	6년 5년 (2013.3.1. 임용자 부터 적용) 6년 (2021.3.1.시행)	8년	10년
나	창원(면), 마산(면), 진해(웅천, 웅동지역)	마산	4년	5년 범위 내	5년	8년	8년	10년
	진주시(면) 사천시(면) 김해시(면) 양산시	진해(웅천, 웅동 지역 제외) 사천시(동) 김해시(동) 양산시(동)	4년	5년 범위 내	5년	8년		
다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진해(웅천, 웅동 지역) 통영시(동) 사천시(면) 김해시(면) 양산시(면) 웅산지역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4년	5년 범위 내	5년			
라	통영시(면)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통영시(면)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4년	5년 범위 내	5년			

- 「면」은 「읍」 지역을 포함한다.
- 교장 인사구역의 '나' 급지에 '창원시(진해 웅천, 웅동)' 지역 포함(2001.3.1. 시행)
- 교장의 '가' 급지 동일교 및 동일 급지 근속연한 변경: 2013.3.1. 임용자부터 적용
<개정 2012.10.23.>
- 교장의 '가' 급지 동일 급지 근속연한 변경: 6년(2021.3.1. 시행)<개정 2020.7.13.>
- 교감, 수석교사, 교사의 마산지역 인사급지 변경
'가' 급지(2015.2.28.이전) → '나' 급지(2015.3.1.이후)<개정 2014.10.13.>
- 교감의 동일교 근속연한은 5년의 범위 내에서 교육장이 정한다.<개정 2019.7.8.>



〈표 2〉

가산점 평정표

종별	평정대상	가산점	적용대상	비고
표 창	1. 교육감 표창 이상, 훈포장(모범공무원 표창 포함)	1.0	전교원	4년간 2회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2. 교육장 표창	0.7		
	3. 학교과제 해결 및 직접 학생을 지도한 실적이 인정되는 타 부처 장관 표창	1.0		
	4. 직속기관장 표창(2010.3.1. 이후 실적)	0.7		
근 무 실	1. 교육지원청 지정 이상 연구(시범실험)학교 근무자(교육실습 협력학교 포함)(6개월마다)(2015.2.28.이전 실적 0.5)	0.3	전교원	4년간 누가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개정 2014.10.13.〉
	2. 교육개발원 협력학교(6개월마다)(2015.2.28. 이전 실적)	0.25		
	3. 교육방송평생(사회)교육, 기초학력책임지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교육과정운영 지역중심학교, 지역 교육청 지정 협력학교 근무자. 단, 기초학력책임지도, 다문화가정자녀 교육 지역중심 학교는 2009.3.1. 이후 실적, 교육과정 운영 지역중심 학교는 2011.3.1.이후 실적(6개월마다)(2015.2.28. 이전 실적)	0.125		
	4. 2년간 복식학급 담당자(6개월마다)	0.5	전교원	4년간 누가 적용 (7호, 9호는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2014.3.1.이후실적) 〈개정 2011.10.24.〉 〈개정 2013.10.17.〉 〈개정 2018.7.17.〉 〈개정 2020.7.13.〉
	5. 2년간 특수교육대상자의 담임(2010.3.1.이후) 또는 복지카드 1~ 3급 소지학생의 담임(2016.3.1.이후 실적), 초등학교 병설중 학교 예체능 교과담당자(6개월마다)	0.25		
	6. 2년간 원어민 교사 코-티처(6개월마다) (영어교사 외 코-티처는 2018.3.1.이후 실적, 풀브라이트 원어민 영어 교사 코-티처는 2020.3.1.이후 실적)〈개정 2017.7.10.〉〈개정 2019.7.8.〉 단, 지자체 지원 원어민 영어교사 코-티처는 2011.3.1. 이후 실적	0.25		
	7. 2년간 교과전담(순회)교사(6개월마다) 단, 교과전담교사는 2012.2.29.까지 실적과 2014.3.1.이후 실적 인정	0.5		
	8. 최근 4년간 파견근무자(6개월마다)	0.25		
	9. 1, 6학년 담임(6개월마다, 2010.3.1. 이후 실적, 단 1학년은 2021.3.1. 이후 실적)	0.25		
	10. 2년간 부장교사(6개월마다, 2019.3.1. 이후 실적)	0.5		
적	11.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연구시범학교 근무자 공동-교감, 교무, 연구부장(주무) 특수학급-가산점평정자료(명부)등재자(6개월마다)	0.25	전교원	4년간 누가 적용
	12. 연수협력 학교 업무담당자(학교당 2명 이내, 2012.3.1. 이후 실적)〈신설 2011.10.24.〉(6개월마다)	0.15		
	13.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동계대회 입상유공자 (교감 및 지도교사: 합류교 포함)(2016.3.1.이후 실적부터 적용) - 금메달 - 은메달 - 동메달 (2016.2.29. 이전 실적 1.0)	5.0 2.5 1.5	전교원	4년간 누가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개정 2013.1.17.〉 〈개정 2014.10.13.〉 〈개정 2018.7.17.〉
	14.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공적으로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국무 총리 이상의 상장(지도자상)수상자 (2016.3.1. 이후 실적부터 적용)	5.0		
	15. 초·중학교 종합체육대회 입상 유공자(도대회) (2021.2.28. 전보까지 적용) ※ 15. 2년간 초·중학교 종합체육대회 입상 유공자(도대회) (2021.3.1.전보부터 적용)	0.5		



종별	평정대상	가산점	적용대상	비고
근무실적	16. 청렴도향상에 기여한 자(조사기관에 신고하여 금품수수 10만원 이상, 공금횡령·유용 100만원 이상 위반행위 발견에 기여한 경우)(현임교 1회만 인정)	0.5	전교원	2016.3.1. 실적부터 적용 <신설 2015.5.15.> <개정 2020.7.13.>
	17. 교감 미배치교의 교감업무 대행자(1인만 인정) (6개월마다, 2018.3.1. 이후 실적)	0.25	전교원	2018.3.1. 실적부터 적용 <신설 2017.7.10.>
	18. 교육지원청 근무 전문상담교사(6개월마다, 2020.3.1. 이후 실적부터)	0.5	전문상담교사	<신설 2019.7.8.>
연구실적	1. 전국 단위 입상자(학생지도실적 포함-경남교육청 추천 대회에 한함)	1.0	전교원	4년간 누가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2. 도 단위 입상자	0.5		
	3. 개인작품 발표자 및 저서 집필자(2인 공저포함) - 2017.2.28.이전 실적<개정 2016.5.25.> - 2017.3.1.~2020.2.29. 실적<개정 2019.7.8.>	0.5 0.2		
	4. 학습지도 연구대회 도대회 입상자(수업연구교사 포함)	0.75		
	5. 수업 명사(취득 후 10년간)* 2018.3.1. 수업명사 인증까지	1.0	전교원	<개정 2018.7.17.>
	6. 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자(임용전 자격취득 포함) ○ 기술사, 기사(1,2급), 기능장, 기능사(1,2급) ○ 워드프로세서(1,2,3급, 단일 등급) ○ 컴퓨터활용능력(1,2,3급) ○ 정보활용능력인증 자격증취득자	0.3	전교원	택일 적용 <개정 2012.10.23.>
	7. 영어능력 시험(유효기간 이내) ○ TOEFL 시험성적 CBT 177, IBT 62이상 ○ TOEIC 시험성적 595이상 ○ TEPS(만점 990점) 시험성적 498이상, TEPS(만점 600점) 시험성적 267이상 ○ 초등교사 영어말하기능력인증 취득자 (경상남도교육감 인증, 2019.2.28. 이전) ○ ESPT 일반 3급 이상(2019.3.1. 이후 실적) ○ 영어교사 TEE 인증교사(취득한 재직학교 실적 1회에 한 함, 2012.3.1. 이후 실적)	0.3	전교원	택일 적용 <신설 2011.10.24.> <개정 2018.7.17.> <개정 2019.7.8.>
	8. 한국어능력검정시험 3급이상(임용전 자격취득 포함)	0.3	전교원	<신설 2012.10.23.>
우우조건	1. 국가유공자와 동 부양자(배우자, 직접 부양하는 자녀와 그 배우자) 순직한 교육공무원의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1.0	전교원	택일 적용 <개정 2015.5.15.> <개정 2017.7.10.> <개정 2019.7.8.> -4항의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배우자는 2016.3.1.이후 실적부터 적용
	2. 부부교원(전문직 포함)은 배우자가 근무하는 교육지원청	0.5		
	3. 부모(배우자 부모포함)를 인사 당해 학년도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하여 직접 봉양하고 있는 자	0.5		
	4. 장애인(1년 이상 장애증명소지자)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중 장애인(장애증명소지자)을 인사 당해 학년도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하여 직접 부양하고 있는 자	1.0		
	5. 55세 이상 교사	1.0	전교사	<개정 2019.7.8.>
	6. 자녀가 3명 이상인 교사	1.0	전교사	6~7 중복 불가 <개정 2012.10.23.> <개정 2020.7.13.>
	7. 자녀가 2명인 교사	0.5		



〈표 3〉

초등(유치원)학교 교사, 교(원)감 경력점 조건표(전보용)

(인사구역 급지 경력점)

월	가 급 지	나 급 지	다 급 지	라 급 지	비 고
1	0.5	0.58	0.67	0.75	
2	1	1.17	1.33	1.5	
3	1.5	1.75	2	2.25	
4	2	2.33	2.67	3	
5	2.5	2.92	3.33	3.75	
6	3	3.50	4	4.5	
7	3.5	4.08	4.67	5.25	
8	4	4.67	5.33	6	
9	4.5	5.25	6	6.75	
10	5	5.83	6.67	7.5	
11	5.5	6.42	7.33	8.25	
12 (1년)	6	7	8	9	

유치원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 인사관계 제 범규에 의한 신규 채용, 전보, 전직, 승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범위)

- ① 이 기준은 본 도의 공립유치원 교원과 유아교육 전문직원 인사에 적용한다.
- ②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기준을 준용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지원청 인사 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 3 조(전보의 시기)

정기 전보는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한다.

다만, 수석교사, 교사는 3월 1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비정기 전보)

- ① 수석교사, 교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최저 근무연한 이내 일지라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5, 6, 7, 8호는 전보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8호는 본인이 요청할 경우 인사권자 소속 인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11호는 본인의 희망과 전보권자의 승인에 의하며, 3호 해당자로 전보된 자는 2년 이내 전 근무지에 가급적 전보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5.25.><개정 2019.7.8.>

1. 정원의 변경, 승진, 강임의 경우
 2. 직위 해제 후 복직된 자
 3. 징계 처분을 받은 자
 4. 감사 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5. 당해 유치원 재직시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6.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저조한 자
- 단, 이 경우 학교(원)장은 전보 요청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 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7.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①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8. 기타 인사 쇄신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9. 전보권자를 달리하는 경우(시·군 관내전보 제외)
 10.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11. 교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 ② 원장, 원감,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최저 근무연한 이내 일지라도 전보할 수 있다. 단, 10호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다.
1. 직위 해제 후 복직된 자
 2. 징계 처분을 받은 자
 3. 행정 처분으로 인사조치가 결정된 자
 4. 당해 유치원 재직시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5.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
 6. 유치원 경영이 부실하거나 중대한 민원을 야기한 자
 7. 기타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8.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①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9.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10. 교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 ③ ①항 2~8호에 해당하는 자와 ②항 1~8호 해당자는 비경합지로 전보한다.
- ④ 원장은 유치원 운영상 필요한 경우 직권 내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비경합지로 전보한다.

제 5 조(인사구역 및 근속연한)

동일 직위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생활근거지 및 희망지 전보로 교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인사구역 및 근속연한을 정하여 교원의 순환 전보를 실시한다.

제 6 조(전보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

전보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은 2월 말일, 8월 말일 현재로 하며, 전보연한의 계산에서 1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0.24.>



제 2 장 신규 채용 및 계약제 교원 임용

제 7 조(교사 신규 채용자 배정과 임용)

- ① 신규 채용자는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명부에 의거 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가급적 고순위자 순으로 배정한다.
- ② 교사 전보 시에는 시·군별 결원의 일정 비율을 신규 채용자로 배정할 수 있다. 다만, 학기 도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교사의 신규 임용은 교육감이 배정한 자를 교육장이 임용한다.
- ④ 신규 채용 교사중 성적 우수자(임용고시 상위 3% 이내)는 본도 인사구역의 '가' 급지 또는 희망지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0.7.13.>

제 8 조(계약제 교원의 임용)

계약제 교원은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또는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한다.<개정 2011.10.24.>

제 3 장 승진

제 9 조(승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승진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하되 가급적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제청)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우선 임용(제청)할 수 있다.

1.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
2. 교육공무원 임용 후 자격을 취득한 승진후보자명부 기 등재자<개정 2016.1.15.>

제 10 조(배치)

승진 임용자는 본도 인사구역의 '가' 급지에는 배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 급지 전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전 직

제 11 조(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

교원을 유아교육 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할 때에는 교육관이 투철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해당 기준에 따라 임용(제청)한다.

- ① 장학(교육연구)관은 원장 경력 또는 원감 경력 1년 이상인 자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를 임용(제청)한다.
- ② 공립유치원 원장(감) 또는 원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전형을 거쳐 임용한다.
- ③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 기능,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해당 분야의 자질과 능력 및 교육감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교사로서 교육장의 추천으로 소정의 전형을 거쳐 임용한다.
- ④ 교육전문직원 경험이 있는 원장(감)의 교육전문직원 전직 임용은 ②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원장의 전직 시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⑤ 교원의 전문직원 임용은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임용 하되 가급적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한다.

제 12 조(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 전직)

- ①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5년 이상, 원감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한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자는 원감 또는 원장으로 전직할 수 있다.<개정 2020.7.13.>
- ② 전 항의 '교육전문직원의 전직'에 관한 사항은 별칙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기준」에 의한다.

제 5 장 전 보

제 13 조(교사·원감의 인사구역 및 근속연한)

- ① 동일 직위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생활근거지 및 희망지 전보로 교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인사금지 및 근속연한을 정하여 순환 전보를 실시한다.



- ② 교사 · 원감의 인사구역 근속연한은 <표 1>과 같이 하되 가, 나 급지의 근속연한은 통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교사의 경우 가, 나 급지 통산하여 단설유치원 근무경력 2년간은 급지의 근속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8.>
- ③ '가', '나' 급지의 도서 · 벽지유치원, 준벽지유치원 근무경력은 당해 급지의 근속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준벽지유치원의 제외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7.10.><개정 2019.7.8.>
- ④ 휴직 기간 및 파견된 기간은 당해 유치원(시·군)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제 14 조(교사원감의 순환 및 희망 전보)

- ① 시·군 및 유치원간의 전보는 <표 1>과 같이 동일유치원 근무기간 1년 이상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개정 2012.10.23.> <개정 2019.7.8.>
- ② 인사구역 시·군간 전보는 <표 1>과 같은 동일 직위에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시·군간 전보는 실정에 따라 그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가' 급지 근무연한 만료자는 '나', '다', '라' 급지에 전보하며, '나' 급지 만료자와 '가', '나' 급지 계속근무 만료자는 '다', '라' 급지에 전보한다.
- ④ 도서·벽지 유치원 근무에 관한 사항은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해당지역 교육장이 정한다.
- ⑤ 익년도에 급지간 순환전보 대상자는 학년도 중에 관내 전보할 수 없다.
- ⑥ 원감은 직무수행 능력, 유치원 평가, 장학실적, 경력, 청렴성, 학부모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한다.
- ⑦ 동일 유치원 근속연한 만기자가 급지내 순환전보지가 없을 경우 타급지로 전보한다.
- ⑧ 파견근무 확정자는 전보하지 아니한다. 다만, 만기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5.25.><개정 2017.7.10.>

제 15 조(교사원감의 전보서열명부 작성)

- ① 원감·교사의 시·군간 전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점, 가산점을 합산하여 원감, 교사별 인사구역별로 전보서열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7.7.10.>
- ② 도 인사구역 급지 경력점은 최근 4년간의 근무기간 중 <표 1>의 급지에 의거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한다. 다만, 타 시·도 전입자의 전입지 인사구역 급지 경력점은 본 도의 '가'급지에 준한다.<개정 2017.7.10.>



인사구역급지	가	나	다	라
1년간 경력점	6	7	8	9

※ 휴직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경력점 평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평정 기간 직전의 실제 근무기간에서 이월하여 당해 평정기간에 산입한다.

단, 도 단위 교육행정, 연구, 연수, 수련기관 파견 근무자의 파견기간은 당해 유치원 근무경력에 산입할 수 있다.

③ 가산점은 <표 2>에 의거 최근 4년간 현 인사구역에서 거양한 실적과 표창에 한하되 우수 조건을 포함한다. 단, 휴직기간 또는 파견 기간이 평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평정 기간 직전의 실제 근무기간에서 이월하여 당해 평정에 산입한다.(휴직기간, 파견기간 삽입은 2015.3.1. 이후 실적) <개정 2014.10.13.> <표 2> 가산점 평정표 중 근무실적의 경력 계산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6개월 단위로 한다. <개정 2013.10.17.> 단, 정보화 관련 자격 및 한국사능력검정 자격은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인정하며, 수업명사 자격은 취득 후 10년간 전보가산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3.10.17., 2015.5.15.>

④ 인사구역 급지에 대한 경력점은 최근 4년에 한하여 연단위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은 월단위로 계산하고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

⑤ 전보서열명부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현임유치원 장기근무자
2. 시·군 경력점 상위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개정 2017.7.10.>

제 16 조(교사원감의 전보)

- ① 원감, 교사의 전보는 서열명부에 의거 고순위자 순으로 전보한다.
- ② 교육지원청 관내 급지 및 학교 간의 전보는 교육장이 행한다.

제 17 조(교사원감의 전보 우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전보 할 수 있다.

- ①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공적으로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상장 또는 지도상 수상자



- ② '가', '나' 급지 근무자 중 동일 급지 간 전보 희망자
동수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결원이 있을 시에는 전보할 수 있다.
- ③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
- ④ 도 지정 이상 연구(시범·실험)유치원의 과제 해결 및 그 외 유치원이 경영상 꼭 필요한 특수영역의 우수 교사로서 전보권자가 승인한 자
- ⑤ 매년 2월 말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교원의 경우 본인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생활근거지(1년 이상 거주), 배우자의 직장(1년 이상 재직) 또는 생활근거지(1년 이상 거주)로 이동시 해당지역 전보자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만 2세 미만 자녀에는 2월말 일까지의 출산 예정 자녀를 포함한다. 단, 전보 서열 명부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10.24., 개정 2012.10.23., 개정 2018.7.17.>
1. 자녀 수가 많은 교원
 2. 전보 서열 명부 고점자 순(인사관리기준 제15조 ①항)
 3. 2호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인사관리기준 제15조 ⑤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 18 조(교사·원감의 전보 유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과 소속 교육장의 요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전보권자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1.10.24.>

1. 도 지정 이상의 연구유치원 근무자로서 진행 중인 연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원감, 연구부장(연구주무)교사
2. 정년퇴임 1년 이내인 자
3. 다자녀교원(3자녀 이상) 중 미취학 아동이 있는 원감, 교사<신설 2018.7.17.>
4. 행복학교 운영상 꼭 필요한 핵심교사(1명)<신설 2020.7.13.>
(2021.3.1.이후 실적)

제 19 조(교사·원감의 전보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

- ① 전보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은 2월 말일, 8월 말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11.10.24.>
- ② 정원 변경으로 인해 부득이 전보된 자(우선 전보되지 못한 경우)는 전임 유치원의 근무경력을 현임 유치원의 근속 경력으로 볼 수 있다.



제 20 조(원장의 전보 및 근속연한)

원장의 전보는 유치원 경영실적과 직무수행 능력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① 유치원간 전보는 <표 1>과 같이 동일유치원, 동일 직위 근속 1년 6개월 이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직무수행 능력, 유치원 평가, 장학실적, 경력,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한다. 다만, 인사상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 희망과 교육장의 내신에 의해 1년 이상자도 전보할 수 있다.
- ② 인사구역 및 시·군간 전보는 <표 1>과 같은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시·군간 전보는 실정에 따라 그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가' 급지 근속연한 만료자와 '가', '나' 급지 근속연한 만료자는 '다', '라' 급지에 전보한다.
- ④ '가', '나' 급지간 계속 근무연한은 통산하며, '나' 급지 근속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가' 급지의 동일 교육지원청 내 유치원간 계속 전보는 1회에 한한다.
- ⑥ 익년도에 급지간 순환전보 대상자는 학년 도중에 관내 전보할 수 없다.

제 21 조(원장의 전보 유예)

전보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과 교육장의 내신에 의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1. 정년퇴임, 원장 중임 만료 1년 이내인 원장<개정 2018.7.17.>
2.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 22 조(교육전문직원의 전보)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① 동일 근무처에서 1년 이상 동일 직위에 근속한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한다.
- ② 당해 교육청 업무 추진과 인사 조직의 실정을 고려하여 전보한다.
- ③ 동일 근무처에서 5년 이상 동일 직위에서 근속한 자는 전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소속 기관장이 전보유예를 신청하여(본인의 희망서 첨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7.7.10.>



제 6 장 사·도 간의 교류

제 23 조(교류)

① 아래 표에 의거 서열명부를 남·여 구분 없이 작성하여 고순위자 순으로 교류한다.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1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개정 2018.7.17.><개정 2019.7.8.> ○ 다음 법률 해당자로서 전출 희망 사·도에 가족(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이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부 별거 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2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 희망 사·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장애인: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 기존 1순위인 전출 희망 사·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는 이 항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0.3.1.자 까지 1순위로 본다.<개정 2019.7.8.> ○ 별거 부부 3년 이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희망 사·도내에 별거 중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자 ○ 자녀 3명 이상 부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자녀 3명 이상 자 ○ 노부모 봉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사·도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1년 이상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부 별거 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p>※ 부부 별거 기간이같은 경우 노부모봉양자 우선</p>
3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거 부부 3년 미만자 ○ 근무희망(생활 연고자 포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부 별거 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② 교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우선 전보할 수 있다.

③ 동수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전출 희망지 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교원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전출을 명할 수 있다. 단, 일방전입을 요구하는 교육감이 별도의 일방전입 기준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해 내신자를 통보할 수 있다.

④ 전출 대상자 요건과 선정 순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13.10.17.>



제 24 조(교환(파견) 근무)

- ① 교육의 지역간, 기관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의 고충 해소를 위해 시·도 교육청간 협의를 통해 상호 1:1 동수 원칙으로 파견근무토록 할 수 있다.
- ② 파견 요건 및 파견 대상자의 선정 등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 7 장 수석교사

제 25 조(수석교사의 인사구역 및 근속연한)

- ① 수석교사의 인사구역 근속연한은 <표 1>과 같다.
- ② 당해 급지 및 동일 유치원 근속연한은 수석교사 임용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7.10.>

제 26 조(수석교사의 순환 및 희망 전보)

- ① 시·군 및 유치원간 전보는 <표 1>과 같이 하되, 수석교사의 동일 유치원 근무 기간은 1년 이상 4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직위에 근속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시·군간 전보는 실정에 따라 그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가', '나'급지 근속연한 만료자는 '다', '라' 급지에 전보한다.
- ③ 수석교사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할 경우는 본인의 희망과 교사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관내 또는 타시·군으로 전보한다.

제 27 조(수석교사의 배치)

- ① 수석교사는 가급적 단설유치원에 1인을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 ② 교육지원청 관내 수석교사 배치는 유치원 교원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행한다.

제 28 조(서열명부 작성)

- ① 수석교사는 지역별로 정원을 배정하고, 수석교사 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원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수석교사의 시·군 전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점에 따라 남·여를 통합하여 희망 교육지원청별로 전보서열 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7.7.10.〉
- ③ 도 인사구역 급지 경력점은 최근 4년간의 수석교사 근무기간 중 〈표 1〉의 급지에 의거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한다.

인사구역급지	가	나	다	라
1년간 경력점	6	7	8	9

- ④ 전보서열 명부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현임 유치원 장기 근무자
 2. 시·군 경력점 상위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개정 2017.7.10.〉



부 칙 (2000. 12. 07. 초등 13060 - 222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 조치)

- ① '93. 2. 28.이전에 인사 조치된 자의 동일 직위(동일교, 동일 급지) 근무연한은 '93학년도 인사관리기준에 의한다. 다만, '94. 3. 1.이후 인사 조치된 자의 동일 직위(동일교, 동일 급지) 근무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94. 2. 28.이전의 급지 간 근무연한은 '94. 3. 1.이후에도 계속 경력으로 본다.
- ③ 2001. 3. 1.자 원감, 교사의 인사구역 급지가 '나' 에서 '다' 급지로 변경된 진해 (웅천, 웅동)지역 근무자는 급지간 순환전보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시행안 예고)

〈표2〉의 전보가산점 평정표 중 일부를 시행안 예고〈표2〉의 비교란 참조와 같이 조정하여 200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29. 인사위 12100-282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시행안 예고) 생략

부 칙 (2002. 11. 23. 인사위 12100-294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4학년도 시행안 예고)

〈표2〉 연구실적의 3.정보화관련 취득자에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자’를 추가하고 해당자에게 0.5를 부여한다.

부 칙 (2003. 11. 18. 인사위 12110-307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5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4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표2〉 연구실적의 3.정보화관련 자격증 취득자에게(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 기술자격에 의한 정보화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0.3을 부여한다.

부 칙 (2004. 11. 29. 인사위-324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6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5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신규 채용 교사 중 성적 우수자(임용고시 상위 10%이내)는 본도 인사구역의 가 급지 또는 희망지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부 칙 (2005. 11. 23. 인사위-2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1. 20. 인사위-26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8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7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시·군내 유치원간의 전보와 시·군간 전보는 동일 직위, 동일유치원 1년 6개월 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②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통합학급 담임(특수교육대상자로서 장애인등록복지카드 1-3급소지 학생)에게 0.5의 전보가산점을 부여한다.
- ③ <표2> 근무실적에 종일반 운영 담당자(1년마다)의 가산점은 0.5를 부여하고, 방학중 종일반 운영 담당자(수업일수 260일 이상)에게는 1.0을 부여한다.
- ④ <표2> 연구실적에 영어능력시험 성적을 추가하고 다음에 해당자에게 0.3을 부여한다.(유효기간 이내)
 - TOEFL 시험성적 CBT 177이상
 - TOEIC 시험성적 595이상
 - TEPS 시험성적 498이상
- ⑤ 제22조(교류)서열명부 작성시에 1년이상 부부 별거 중언자로서 자녀 3명 이상 부양자는 다음 표와 같이 2순위에 부여한다.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2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거 부부 3년 이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희망 사도내에 별거 중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자 ○ 자녀 3명 이상 부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자녀 3명 이상 자 ○ 노부모 봉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사도에 부부중 한사람이 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부 별거 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 부부별거기간이 같은 경우 3자녀 부양자, 노부모 봉양자 순



부 칙 (2007. 11. 01. 인사위-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9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8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원감의 경우 유치원 근무연한 만료자가 급지내 순환 전보지가 없을 경우 타 급지로 전보한다.
- ② <표 2> 근무실적에 미감아 담당자(1년마다) 가산점 1.0을 부여하는 것을 삭제한다.
- ③ <표 2> 근무실적에 2년간 지역센타유치원 근무자에게 (1년마다) 가산점 0.5 점을 부여한다.
- ④ <표 2> 근무실적에 본도 다,라 급지 ㊸급지(시,군)이하 공립유치원 2년 계속 근무 시 1.0 부여, 초과근무(1년마다) 0.5점 부여하던 것을 삭제한다.
- ⑤ <표 2> 연구실적에 수업명사에게 1.0을 부여한다.

부 칙 (2008. 10. 30. 인사위-1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03. 인사위-7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 조치)

- ① 2010. 3. 1.자 원감, 교사의 인사구역 급지가 '나'에서 '다' 급지로 변경된 진해(웅천, 웅동)지역 근무자는 급지간 순환전보 된 것으로 본다.
- ② 2010. 3. 1.자 원감, 교사의 인사구역 급지가 '다' 급지에서 '나' 급지로 변경된 진해(웅천, 웅동)지역 근무자와 '나', '라' 급지에서 '다' 급지로 변경된 통영지역 근무자는 급지간 순환전보 된 것으로 본다.
- ③ 2010. 3. 1.자 원장의 인사구역 급지가 '가', '라'급 에서 '나' 급지로 변경된 통영지역 근무자는 급지간 순환전보 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2011학년도 시행안 예고)

2010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매년 3월 1일자 기준 만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교사의 생활근거지로의 전보는 우선할 수 있다.
- ② 다음 법률 해당자로서 전출희망 시·도에 가족(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이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부 칙 (2010. 11. 04. 인사위-10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12학년도 시행안 예고)

2011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제15조(교사·원감의 전보서열명부 작성) ④항 <표2> 가산점평정표(유치원)는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종별	평정대상	가산점	적용대상	비고
표창	1. ~ 2. (현행과 같음) 3. 유치원 과제 해결 및 직접 원아를 지도한 실적이 인정되는 타 부처 장관 표창, 2011.3.1. 이후 실적	1.0	(현행과 같음)	

- ② 제23조(타 시·도 간 교류) ①항의 표는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종별	대상자	순위별 결정기준
1 순위	○ 전출 희망 사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 1급 장애인 부양(장애인 :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순위	○ (현행과 같음) ○ 노부모 봉양자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사도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1년 이상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현행과 같음)

부 칙 (2011. 1. 31. 인사위-2208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24. 인사위-5109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23. 인사위-23913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 조치)

① 2012.3.1.자 유아체험교육원 전입자는 급지간 순환전보 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2015학년도 시행안 예고)

2013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동일 직위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생활근거지 및 희망지 전보로 교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인사급지 및 근속연한을 정하여 순환 전보를 실시한다.(가급지 근무연한 7년→8년)
- ② 교사·원감은 <표 1>과 같이 가, 나 급지의 근속연한은 통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가, 나급지 근속연한 8년→10년)

부 칙 (2013. 10. 17. 인사위-761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13. 인사위-4024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28. 인사위-2015-2877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5. 15. 인사위-2015-1714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5. 25. 인사위-2016-18630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5. 25. 인사위-2016-18630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0. 인사위-2017-02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17. 인사위-2018-03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8. 인사위-2019-05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21학년도 시행안 예고)

2020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2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교사의 경우 가, 나 금지 통산하여 단설유치원 근무경력 2년간은 금지의 근속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20. 7. 13. 인사위-2020-06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 1〉

인사구역 및 동일 직위 근속연한

급 지	인 사 구 역		동 일 직 위			근 무 연 한		
	원장인사 구 역	원감, 교사 인사구역	동일유치원 근속연한			동일 급지별 근속연한		
			원 장	원감, 교사	수석 교사	원 장	원 감	수석교사 교 사
가	창원(동) 마산(동),진해 진주시(동) 사천시(동) 김해시(동)	창원, 마산 진주시	4년	4년의 범위내에서 지역교육장 이 정한다.	4년	6년	8년	8년
나	창원(면) 마산(면) 진주시(면) 통영시 사천시(면) 김해시(면) 양산시	진해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4년	"	4년	8년	10년	10년
다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통영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4년	"	4년			
라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4년	"	4년			

○ 원감, 교사 인사구역의 '나' 급지에 창원시(진해 웅천, 웅동)지역 포함(2010.3.1.시행)
 ○ 원감, 교사 인사구역의 통영 '나', '라' 급지를 '다' 급지로 변경(2010.3.1.시행)
 ○ 원장 인사구역의 통영 '가', '라' 급지를 '나' 급지로 변경(2010.3.1.시행)
 ○ 원감, 교사 동일 급지별 근속연한 변경(2015.3.1.시행)
 ○ 가, 나 급지의 근속연한은 통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2015.3.1.시행)
 ○ 교사의 경우 가, 나 급지 통산하여 단설유치원 근무경력 2년간은 급지의 근속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21.3.1.시행)



〈표 2〉

가산점 평정표

종별	평정대상	가산점	적용대상	비고
표창	1. 교육감 표창이상, 훈포장 (모범공무원 표창 포함)	1.0	전교원	4년간 2회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신설 2011.10.24.〉
	2. 교육장 표창	0.7		
	3. 유치원 과제 해결 및 직접 원아를 지도한 실적이 인정되는 타부처 장관 표창, 2011.3.1. 이후 실적	1.0		
	4. 직속기관장 표창(2012.3.1. 이후 실적) 단, 현 소속 직속기관과 파견된 직속기관으로부터 받은 표창은 불인정	0.7		
근무실적	1. 교육지원청지정이상 연구(시범·실험) 유치원 근무(6개월마다) (2015.2.28.이전 실적 0.5)	0.3	전교원	4년간 누가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개정 2011.10.24.〉
	2. 교육지원청지정이상 연구(시범·실험) 학교의 병설유치원 근무자(6개월마다) (2015.3.1.이후 0.125)	0.25		
	3. 교육실습협력유치원 근무자(6개월마다) 원감은 2012.3.1. 이후 실적 (2015.3.1.이후 0.3)	0.5		
	4. 지역거점(센터)유치원 및 교육과정거점유치원 근무자(6개월마다) (교육과정거점유치원 근무자는 2021.3.1.이후 실적)〈개정 2020.7.13.〉 - 2014.2.28.이전 실적(6개월마다)	0.25	전교원	4년간 누가 적용 〈개정2013.10.17.〉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개정 2015.5.15.〉
	5. 2년간 공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의 담임 또는 복지카드 1~3급 소지학생의 담임 (2016.3.1.이후 실적) 〈개정 2015.5.15.〉〈개정 2017.7.10.〉 ○ 6개월마다	0.5		
	6. 최근 4년간 도서·벽지학교병설유치원 근무(6개월마다) ○ 가, 나 급지 ○ 다, 라 급지	0.75 0.5		
	7. 2년간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 (특수교육대상자)(2016.2.29.이전 실적) 〈개정 2015.5.15.〉 ○ 6개월마다	0.25	전교원	4년간 누가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6, 7, 8, 9, 10, 11)
	8. 2년간 방과후과정 담당교사(2017.2.28.까지 실적) 방과후전담교사 제외-2016.3.1.실적부터 〈개정 2015.5.15.〉〈개정 2016.5.25.〉 ○ 6개월마다	0.25		
	○ 연중 방과후과정 담당자 (연간수업일수260일 이상 운영자 1년마다)	1.0		
	9. 2년간 방과후과정 전담교사(6개월마다) (2020.3.1.이후 실적)〈신설 2019.7.8.〉	0.25		



종별	평 정 대 상	가산점	적용대상	비 고
근 무 실 적	10. 2년간 방과후과정 수업교사(2017.3.1. 실적부터) ○ 연중 방과후과정 260일 이상 수업교사(1년마다) ○ 방과후과정 포함 1일 8시간 수업교사 (6개월마다)<신설 2016.5.25.>	1.0 0.5		
	11. 2년간 단설유치원 근무자(6개월마다)	0.5		
	12. 1년간 신설유치원 근무자(6개월마다) (2020.3.1.이후 실적)	0.5	전교원	<신설 2019.7.8.>
	13. 청렴도향상에 기여한 자(조사기관에 신고하여 금 품수수 10만원 이상, 공금횡령·유용 100만원 이상 위반행위 발견에 기여한 경우(현임교 1회만 인정)<신 설 2015.5.15.>(2016.3.1. 이후 실적)	0.5	전교원	<개정 2020.7.13.>
14. 2년간 부장교사(6개월마다)(2021.3.1.이후 실적)	0.5		<신설 2020.7.13.>	
연 구 실 적	1. 도단위 이상 입상자 2. 개인작품 발표자 및 저서 집필자(2인 공저포함) - 2017.2.28.이전 실적<개정 2016.5.25.> - 2017.3.1.~2020.2.29. 실적 <개정 2019.7.8.>	1.0 0.5 0.2	전교원	4년간 누가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3. 정보화관련 자격증 취득자(임용전 자격취득 포함) ○ 기술사, 기사(1,2급), 기능장, 기능사(1,2급) ○ 워드프로세서(1,2,3급, 단일 등급) ○ 컴퓨터활용능력(1,2,3급) ○ 정보활용능력인증 자격증취득자	0.3	전교원	택일 적용 <개정 2012.10.23.>
	4. 영어능력 시험(유효기간 이내) ○ TOEFL시험성적 CBT 177, IBT 62이상 ○ TOEIC시험성적 595이상 ○ TEPS(만점990점) 시험성적 498이상, TEPS(만점600점) 시험성적 267이상<개정 2019.7.8.>	0.3	전교원	택일 적용
	5. 수업명사(취득 후 10년간)<개정 2013.10.17.>	1.0	전교원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임용전 자격취득 포함)	0.3	전교원	<신설 2012.10.23.>
	우 우 조 건	1. 국가유공자와 동 부양자(배우자, 직접 부양하는 자녀와 그 배우자), 순직한 교육공무원의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1.0	
2. 부부교원(전문직 포함)은 배우자가 근무하는 교육지원청		0.5		
3. 부모(배우자부모 포함)를 인사 당해 학년도 말일 기 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하여 직접 봉양하고 있는 자		0.5	전교원	택일 적용 <개정 2017.7.10.> <개정 2019.7.8.>
4. 장애인(1년 이상 장애증명소지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중 장애인(장애증명 소지자)을 인사 당해 학년도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하여 직접 부양하고 있는 자		1.0		
5. 55세 이상 교사		1.0	전교사	<개정 2019.7.8.>
6. 자녀가 3명 이상인 교사		1.0	전교사	<신설 2012.10.23.>

특 수(유치원)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제 법규에 의한 신규 채용, 전보, 전직, 승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특수학교 유치원과정과 특수학급 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및 특수교육전문직원 인사에 적용한다.<개정 2016.5.25.><개정 2020.7.13.>

제 2 조(용어 정의)

이 기준에서 ‘전보’라 함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⑨항과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자격 증만 소지한 자가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유치원↔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개정 2015.5.15.><개정 2020.7.13.>

제 3 조(전보의 시기)

정기 전보는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한다.

단, 교사는 3월 1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비정기 전보)

① 교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최저 근무연한 이내 일지라도 전보할 수 있다.

단, 5, 6, 7, 8호는 전보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8호는 본인이 요청할 경우 인사권자 소속 인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10호는 본인의 희망과 전보권자의 승인에 의하며, 3호 해당자로 전보된 자는 2년 이내 전 근무지에 가급적 전보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5.25.> <개정 2019.7.8.>

1. 정원의 변경, 승진, 강임의 경우
2. 직위 해제 후 복직된 자
3. 징계 처분을 받은 자



4. 감사 결과 인사 조치 지시된 자
 5. 현 근무기관(유치원)에 재직 시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6.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 단, 이 경우 학교(원)장은 전보 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한다.
 7. 교육공무원법 제 10조의3 제①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8. 기타 인사 쇄신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9. 전보권자를 달리하는 경우(시·군 관내 전보 제외)
 10.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11. 당해 교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12. 동일교에 근무하는 부부교원 및 직계 존·비속
 13.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②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최저 근무연한 이내 일지라도 전보할 수 있다. 단, 10호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다.
1. 직위 해제 후 복직된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행정처분으로 인사조치가 결정된 자
 4. 당해학교에 재직 시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5.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
 6. 학교경영이 부실하거나 중대한 민원을 야기한 자
 7. 기타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8. 교육공무원법 제 10조의3 제①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9.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10. 교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 ③ ①항 2~8호 해당자와 ②항 1~8호 해당자는 비경합지로 전보한다.
- ④ 학교(원)장은 학교(유치원) 운영상 교원의 전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직권 내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비경합지에 내신하여야 한다.



제 5 조(인사 금지 및 근속연한)

- ① 동일 직위 및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생활 근거지 및 희망지 전보로 교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인사 금지 및 근속연한을 정하여 교원의 순환 전보를 실시한다.
- ② '97. 3. 1. 이전의 특수학교 및 금지 간 근무 경력은 계속 근무로 본다.

제 6 조(전보 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

- ① 전보 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은 2월 말일, 8월 말일 현재로 하며, 전보 연한 계산에서 1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24.>

제 2 장 신규 채용 및 계약제 교원 임용

제 7 조(교사, 신규 채용자 배정과 임용)

- ① 신규 채용자는 교사 임용 후보자 명부에 의거 임용 예정 인원 3배수 범위 내에서 고순위자 순으로 배정한다.
- ② 신규 채용자는 희망에 따라 가급적 생활 근거지에 배치한다. 단, 그 지역에 경합이 있을 때와 학기 도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교사로 채용되는 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는 경합 금지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 8 조(계약제 교원의 임용)

- ① 계약제 교원은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학교(원)장이 임명한다. 단,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학교급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학교급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희망이 없을 경우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1.10.24.><개정 2020.7.13.>



제 3 장 승진

제 9 조(승진)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하되 가급적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제청)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우선 임용(제청)할 수 있다.

1.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
2. 교육공무원 임용 후 자격을 취득한 승진 후보자 명부 기 등재자

제 10 조(배치)

승진 임용자는 경합 급지에는 배치하지 아니한다.

단, 경합 급지 전입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전직

제 11 조(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전직)

교원을 특수교육 전문직원으로서 전직 임용할 때에는 교육관이 투철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제청)한다.

- ① 장학(교육연구)관은 교장, 교감이거나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임용(제청)한다.
- ② 장학(교육연구)사는 교감 또는 교감 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특수학교장의 추천으로 소정의 전형을 거쳐 임용한다
- ③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 기능, 경험이 필요한 분야의 장학(교육연구)사는 해당 분야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특수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전형을 거쳐 임용한다.



- ④ 교장 및 교육전문직원 경험이 있는 자의 교육전문직원 전직 임용은 ②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교장의 전직 시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⑤ 현직 교원의 교육전문직원 임용은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하되 가급적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한다.
- ⑥ 교육지원청 장학사 및 직속 기관의 장학(교육연구)사 임용 절차는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기준」에 의한다.

제 12 조(특수교육 전문직원의 전직)

- ① 특수교육 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경우 5년 이상,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자는 교감 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다.
- ② 전 항의 「교육전문직원의 전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칙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기준」에 의한다.

제 5 장 전 보

제 13 조(교사교감의 순환 및 희망 전보)

- ① 특수학교(급) 간의 전보는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② 학교(급·특수교육지원센터) 간의 전보는 <표 1>과 같이 하되, 동일 학교(유치원) 근무 기간은 1년 이상 5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직위에 근속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10.23.>
-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기간은 당해지역 근속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8.2.28.이전 실적) <개정 2017.7.10.>
- ④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특수교사는 우선 전보할 수 있다. (2010.3.1.이후, 2018.2.28.이전 실적) <개정 2017.7.10.>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과 소속 학교(유치원)의 장의 요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전보권자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1. 연구(실험·시범)학교 근무자로서 연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학교의 교감, 연구부장(연구부장이 없는 학교는 연구 주무)
 2. 정년퇴임을 1년 이내 앞둔 자
 3. 학교경영상 꼭 필요한 특수영역의 우수교사<신설 2011.10.24.>
 4. 다자녀교원(3자녀 이상) 중 미취학 아동이 있는 교감, 교사<신설 2018.7.17.>
- ⑥ 학교(유치원) 간 전보는 <표 1>과 같은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실정에 따라 그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 ⑦ 교사는 ‘가’, ‘나’ 급지 간 계속 근무연한을 통산하여 1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 ‘나’ 급지 만료자는 ‘다’, ‘라’ 급지에 전보한다.(단, 동일 지역 내의 다른 급지로의 전보는 불가하다.)<개정 2018.11.16.>
- ⑧ 교감의 급지 근무연한 만료자는 <표 1>에 준하여 전보한다.(단, 동일 지역 내의 다른 급지로의 전보는 불가하다.)<개정 2018.11.16.>
- ⑨ 장애 영역에 따라 전입하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교사의 장애(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사정상 타 학교(유치원) 근무가 어려울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과 학교(원)장의 의견에 따라 장기 근무를 허용할 수 있다.
- ⑩ 익년도 급지 간 순환 전보 대상자는 학년 도중에 전보할 수 없다.
- ⑪ 매년 2월 말일 기준 만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교원의 경우 본인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생활근거지(1년 이상 거주), 배우자의 직장(1년 이상 재직) 또는 생활근거지(1년 이상 거주)로 이동시 해당지역 전보자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만 2세 미만 자녀에는 2월말 일까지의 출산 예정 자녀를 포함한다. 단, 전보 서열 명부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한다.<개정 2011.10.24.><개정 2012.10.23.><개정 2018.7.17.>
1. 자녀 수가 많은 교원
 2. 전보 서열 명부 고점자 순(인사관리기준 제15조 ①항)
 3. 2호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인사관리기준 제15조 ④항의 규정을 따른다.
- ⑫ 파견근무 확정자는 전보하지 아니한다. 다만, 만기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5.> <개정 2017.7.10.>
- ⑬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과원이 발생한 경우 우선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 ⑭ 교사의 경우 가, 나, 급지 통산하여 단설유치원 근무경력 2년간은 급지의 근속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7.13.>



제 14 조(전보 서열 명부 작성)

① 특수학교(유치원) 교원이 전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점, 가산점을 합산하여 학교(유치원)별로 전보 서열 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7.7.10.〉
〈개정 2020.7.13.〉

② 경력점 평정은 최근 4년 간의 근무 기간 중 <표 1>의 인사 급지에 의거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하되, 1년 이상은 연 단위로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

단, '나', '다' 급지 근무자의 초과 경력은 4년에 한하여 1년마다 1점을 가산하되 현임 학교(유치원) 또는 시·군의 근속 초과 경력에 한한다. 타·시도 전입자의 전임지 인사구역 급지 경력점은 본 도의 '가'급지에 준하고, 초과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5.25.〉

휴직 기간 또는 파견 기간이 경력점 평정 기간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평정 기간 직전의 실제 근무 기간에서 이월하여 당해 평정 기간에 산입한다. 단, 도 단위 교육행정, 연구, 연수, 수련 기관 파견 근무자의 파견 기간은 당해 학교(유치원) 근무 경력으로 산입할 수 있다.(휴직·파견 기간 삽입 2015.3.1.이후 실적)
〈개정2014.10.13.〉

인사구역급지	가	나	다	라
1년간 경력점	6	7	8	9

③ 가산점은 <표 2>에 의거 최근 4년 간 현 인사구역에서 거양한 근무 실적에 한하되 우수 조건을 포함한다. 단, 휴직기간 또는 파견 기간이 평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평정 기간 직전의 실제 근무기간에서 이월하여 당해 평정에 산입한다.(휴직기간, 파견 기간 삽입은 2015.3.1. 이후 실적) <표 2> 가산점 평정표 중 근무 실적의 경력 계산은 학년도 기준으로 하되 근무실적 1, 3, 4, 5, 6, 7, 8호는 6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한다. 단, 교육청의 지정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와 교과전담교사 6개월 미만일 경우 월마다 0.1점을 인정한다. 정보화 관련 자격 및 한국사능력검정 자격은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인정하며 <개정 2013.10.17., 2014.10.13., 2015.5.15.〉, 수업명사 자격은 취득 후 10년간 가산점을 부여한다.〈개정 2016.5.25.〉 <개정 2019.7.8.〉

④ 전보 서열 명부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고순위자를 결정한다.



1. 현임교 장기 근무자
2. 시·군 경력점 상위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개정 2017.7.10.>

제 15 조(교사·교감의 전보)

- ① 교사, 교감의 전보는 서열 명부에 의거 고순위자 순으로 전보한다.
- ② 교육지원청 관내 급지 및 학교(유치원) 간의 전보는 교육장이 행한다.
<신설2016.5.25.>

제 16 조(교장의 순환 전보 및 희망 전보)

교장 전보는 학교 경영 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거 시행한다.

- ① 동일 학교 근무 1년 6개월 이상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② 급지 간 근속연한 만료자는 다른 급지에 전보한다.

제 17 조(교장의 전보의 유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1. 연구(실험·시범)학교 근무자로서 연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2. 정년퇴임 1년 이내인 자

제 18 조(교육전문직원의 전보)

특수교육 담당 교육전문직 전보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① 동일 근무처에서 1년 이상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한다.
- ② 당해 교육지원청 업무 추진과 인사 조직의 실정을 고려하여 전보한다.
- ③ 동일 근무처에서 5년 이상 동일 직위에서 근속한 자는 전보한다.(경남특수교육원은 3년으로 한다. 단, 2018.3.1.이후 실적) <개정 2017.7.10.>
단,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소속 기관장이 전보 유예를 신청하여 (본인의 희망서 첨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제 6 장 국·공립학교 및 시도 간의 교류

제 19 조(국 · 공립학교 간의 교류)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국립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용하고,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교육감의 3배수 추천에 의거 국립학교장이 임용한다.

- ①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될 자의 급지 및 가산점 인정은 초등 인사관리 기준에 준하여 산정하고 희망지역의 전보 서열명부에 산입시킨다. 단, 근속연한 만기 근무자는 우선 임용할 수 있다.
- ② 국립학교 전입자 중 ‘가’ 급지 근무자는 ‘가’ 급지 근무 만료 전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3.10.17.>

제 20 조(타 시도 간의 교류)

- ① 아래 표에 의거 서열 명부를 남·여 구분 없이 작성하여 고순위 순으로 교류한다.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1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개정 2018.7.17.><개정 2019.7.8.> ○ 다음 법률 해당자로서 전출 희망 사도에 가족(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이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부 별거 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2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 희망 사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 (장애인: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 기존 1순위인 전출 희망 사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부양해야하는 자는 이 항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0.3.1.자 까지 1순위로 본다.<개정 2019.7.8.> ○ 별거 부부 3년 이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희망 사도내에 별거 중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자 ○ 자녀 3명 이상 부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자녀 3명 이상 자 ○ 노부모 봉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사도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1년 이상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부 별거 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 부부 별거 기간이 같은 경우 노부모 봉양자 우선
3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거 부부 3년 미만자 ○ 근무희망 (생활 연고자 포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부 별거 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 ② 교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우선 전보할 수 있다.
- ③ 동수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전출 희망지 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교원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전출을 명할 수 있다. 단, 일방전입을 요구하는 교육감이 별도의 일방전입 기준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해 내신자를 통보할 수 있다.
- ④ 전출 대상자 요건과 선정 순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3.10.17.>

제 21 조(교환(파견)근무)

- ① 교육의 지역 간, 기관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의 고충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 상호 1:1 동수 원칙으로 파견 근무토록 할 수 있다.
- ② 파견 요건 및 파견 대상자의 선정 등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부 칙 (2020. 7. 13. 인사위-2020-6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인사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특수(유·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의해 적용된 인사기준은 2021. 특수(유치원) 인사관리기준에 의한 것으로 본다.



〈표 1〉

인사구역 및 동일 직위 근속연한

급 지	인 사 구 역		동 일 직 위		근 무 연 한		
	교장인사 구 역	교감, 교사 인사구역	동일교 근속연한		동일 급지별 근속연한		
			교 장	교감, 교사	교 장	교 감	교 사
가	경남해림학교 창원천광학교	창원, 마산 진주시 경남해림학교 창원천광학교	4년	5년	6년	8년	10년
나	진주해광학교 김해은혜학교	진해 (웅천, 웅동지역제외) 사천시(동) 김해시(동) 양산시(동) 진주해광학교 김해은혜학교	4년	5년	8년	10년	12년
다	의령은광학교 양산희망학교	진해(웅천, 웅동지역) 통영시(동) 사천시(면) 김해시(면) 양산시(면, 웅상지역)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의령은광학교 양산희망학교	4년	5년			
라	통영잠포학교 거창나래학교	통영시(면)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통영잠포학교	4년	5년			

○ 「면」은 「읍」지역을 포함한다.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인사구역 및 인사급지를 적용한다.
〈신설 2011.10.24.〉

○ 교명변경 : 경남은혜학교 → 김해은혜학교(2017.3.1. 시행)
 경남은광학교 → 의령은광학교(2021.3.1. 시행)



〈표 2〉

가산점 평정표

종별	평정대상	가산점	적용대상	비고
표창	1. 교육감 표창 이상, 훈포장(모범공무원표창 포함) 2. 교육장 표창 3. 직속기관장 표창(2010.3.1.이후 실적) 4. 학교(유치원)과제 해결 및 직접 유아를 지도한 실적이 인정되는 타 부처 장관 표창, 2011.3.1. 이후 실적	1.0 0.7 0.7 1.0	전교원	4년간 2회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근무실적	1. 교육지원청교육청 지정 이상 연구(시범·실험) 학교(유치원) 근무자(교육실습협력학교 유치원 포함, 2015.3.1.이후 실적)(6개월마다) (2015.2.28.이전 실적 0.5)	0.3	전교원	4년간 누가 적용 〈개정2013.10.17.〉
	2.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6개월마다) 3. 2년간 단설유치원 근무자(6개월마다) (2020.3.1.이후 실적)	1.0 0.5		〈신설 2019.7.8.〉
	4. 거점유치원(지역, 교육과정, 통합교육) 근무자(6개월마다)(교육과정 및 통합교육거점유치원 근무자는 2021.3.1.이후 실적) 5. 1년간 신설유치원(단설신설, 병설신설학급 단, 증설학급은 제외) 근무자(6개월마다) (2021.3.1.이후 실적)	0.25 0.5		〈개정 2020.7.13.〉 〈신설 2020.7.13.〉
	6. 청렴도향상에 기여한 자 (조사기관에 신고하여 금품수수 10만원 이상, 공금 횡령·유용 100만원 이상 위반행위 발견에 기여한 경우)(현임교 1회만 인정) 〈신설 2015.5.15.〉(2016.3.1.이후 실적)	0.5	전교원	〈개정 2020.7.13.〉
연구실적	1. 전국 단위 입상자(학생지도 실적포함) 2. 도 단위 입상자 3. 개인작품 발표자 및 저서 집필자(2인 공저포함) - 2017.2.28.이전 실적 〈개정 2016.5.25.〉 - 2017.3.1.~2020.2.29. 실적 〈개정 2019.7.8.〉 4. 학습지도연구대회 도대회 입상자 (2010. 3.1.이후 실적) - 특수교육수업연구교사연구대회 입상자 (2013.3.1.이후 실적)	1.0 0.5 0.5 0.2 0.75 0.75	전교원	4년간 누가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개정 2012.10.23.〉



종별	평 정 대 상	가산점	적용대상	비 고
연 구 실 적	5. 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자(임용전 자격취득 포함) ○ 기술사, 기사(1,2급), 기능장, 기능사(1,2급) ○ 워드프로세서(1,2,3급, 단일 등급) ○ 컴퓨터활용능력(1,2,3급) ○ 정보활용능력인증 자격증취득자	0.3	전교원	택일적용
	6. 영어능력 시험(유효 기간 이내) ○ TOEFL 시험성적 CBT 177, IBT 62이상 ○ TOEIC 시험성적 595이상 ○ TEPS(만점990점) 시험성적 498이상, TEPS(만점600점) 시험성적 267이상 ○ ESPT 일반 3급 이상(2019.3.1. 이후 실적)	0.3	전교원	택일 적용 〈개정 2020.7.13.〉
	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임용전 자격취득 포함)	0.3		〈신설 2012.10.23.〉
	8. 수업 명사(취득 후 10년간)	1.0		〈신설 2016.5.25.〉
우 우 조 건	1. 국가유공자와 동 부양자(배우자, 직접 부양 하는 자녀와 그 배우자),순직한 교육공무원의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1.0	전교원	택일 적용 〈개정 2011.10.24.〉 〈개정 2017.7.10.〉 〈개정 2019.7.8.〉
	2. 부부교원(전문직 포함)은 배우자가 근무하는 교 육지원청	0.5		
	3. 부모(배우자 부모포함)를 인사 당해 학년도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하여 직접 봉양하고 있는 자	0.5		
	4. 장애인(1년 이상 장애증명소지자)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중 장애인(장애 증명소지자)을 인사 당해 학년도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하여 직접 부양하고 있는 자	1.0		
	5. 55세 이상 교사	1.0	전교사	〈개정 2019.7.8.〉
	6. 자녀가 3명 이상인 교사	1.0	전교사	〈개정 2012.10.23.〉

특 수(초등)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제 법규에 의한 신규 채용, 전보, 전직, 승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특수학교(초등)와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초등) 및 특수 교육전문직원 인사에 적용한다.<개정 2016.5.25.><개정 2020.7.13.>

제 2 조(용어 정의)

이 기준에서 ‘전보’라 함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⑨항과 특수학교(초등) 교사 자격 증만 소지한 자가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초등학교↔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개정 2015.5.15.><개정 2020.7.13.>

제 3 조(전보의 시기)

정기 전보는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한다.

단, 교사는 3월 1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비정기 전보)

① 교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최저 근무 연한 이내 일지라도 전보할 수 있다.

단, 5, 6, 7, 8호는 전보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8호는 본인이 요청할 경우 인사권자 소속 인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10호는 본인의 희망과 전보권자의 승인에 의하며, 3호 해당자로 전보된 자는 2년 이내 전 근무지에 가급적 전보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5.25.><개정 2019.7.8.>

1. 정원의 변경, 승진, 강임의 경우
2. 직위 해제 후 복직된 자
3. 징계 처분을 받은 자



4. 감사 결과 인사 조치 지시된 자
 5. 당해 학교에 재직 시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6.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 단, 이 경우 학교장은 전보 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7. 교육공무원법 제 10조의3 제①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8. 기타 인사 쇄신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9. 전보권자를 달리하는 경우(시·군 관내 전보 제외)
 10.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11. 당해 교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12. 동일교에 근무하는 부부교원 및 직계 존·비속
 13.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②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최저 근무연한 이내 일지라도 전보할 수 있다. 단, 10호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다.
1. 직위 해제 후 복직된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행정처분으로 인사조치가 결정된 자
 4. 당해 학교에 재직 시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5.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
 6. 학교경영이 부실하거나 중대한 민원을 야기한 자
 7. 기타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8. 교육공무원법 제 10조의3 제①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9.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10.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 ③ ①항 2~8호 해당자와 ②항 1~8호 해당자는 비경합지로 전보한다.
- ④ 학교장은 학교 운영상 교원의 전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직권 내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비경합지에 내신하여야 한다.



제 5 조(인사 금지 및 근속연한)

- ① 동일 직위 및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생활 근거지 및 희망지 전보로 교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인사 금지 및 근속연한을 정하여 교원의 순환 전보를 실시한다.
- ② '97. 3. 1. 이전의 특수학교 및 금지 간 근무 경력은 계속 근무로 본다.

제 6 조(전보 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

- ① 전보 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은 2월 말일, 8월 말일 현재로 하며, 전보 연한 계산에서 1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0.24.>

제 2 장 신규 채용 및 계약제 교원 임용

제 7 조(교사, 신규 채용자 배정과 임용)

- ① 신규 채용자는 교사 임용 후보자 명부에 의거 임용 예정 인원 3배수 범위 내에서 고순위자 순으로 배정한다.
- ② 신규 채용자는 희망에 따라 가급적 생활 근거지에 배치한다. 단, 그 지역에 경합이 있을 때와 학기 도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교사로 채용되는 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는 경합 금지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 8 조(계약제 교원의 임용)

- ① 계약제 교원은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학교장이 임명한다. 단,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학교급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학교급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희망이 없을 경우 일반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1.10.24.>



제 3 장 승진

제 9 조(승진)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하되 가급적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제청)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우선 임용(제청)할 수 있다.

1.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
2. 승진 후보자 명부 기 등재자
3. 여성 승진 후보자

단, 3호는 교육감이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 10 조(배치)

승진 임용자는 경합 급지에는 배치하지 아니한다.

단, 경합 급지 전입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전직

제 11 조(교원의 전직 임용)

- ① 초등학교 교원이 특수학교 교원으로 전직할 때는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 소지자로서 특수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우선하되, 전직 희망자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전직 후보자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한다.
- ② 교원의 특수학교 전입 후보자 서열 명부는 초등 교사 전보 점수 기준에 의한다.
- ③ 초등학교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학교 교원이 특수학교에 4년 이상 근무하고 초등학교 교원으로 전직을 희망할 경우에는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0.7.13.>



- ④ 특수학교 교원이 초등학교로 전직 시 특수학교에 근무한 경력은 급지 간 근속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7.13.>
- ⑤ 재활복지교사가 특수교사로 전직할 때는 전직 후보자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한다.

제 12 조(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

교원을 특수교육 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할 때에는 교육관이 투철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제청)한다.

- ① 장학(교육연구)관은 교장, 교감이거나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임용(제청)한다.
- ② 장학(교육연구)사는 교감 또는 교감 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특수학교장의 추천으로 소정의 전형을 거쳐 임용한다.
- ③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 기능, 경험이 필요한 분야의 장학(교육연구)사는 해당 분야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특수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전형을 거쳐 임용한다.
- ④ 교장 및 교육전문직원 경험이 있는 자의 교육전문직원 전직 임용은 ②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교장의 전직 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 ⑤ 현직 교원의 교육전문직원 임용은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하되 가급적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한다.
- ⑥ 교육지원청 장학사 및 직속 기관의 장학(교육연구)사 임용 절차는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기준」에 의한다.

제 13 조(특수교육 전문직원의 전직)

- ① 특수교육 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경우 5년 이상,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자는 교감, 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다.<개정 2020.7.13.>
- ② 전 항의 「교육전문직원의 전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칙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기준」에 의한다.



제 5 장 전 보

제 14 조(교사교감의 순환 및 희망 전보)

- ① 특수학교(급) 간의 전보는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② 학교(급·특수교육지원센터) 간의 전보는 <표 1>과 같이 하되, 동일 학교 근무 기간은 1년 이상 5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직위에 근속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10.23.>
-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기간은 당해지역 근속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8.2.28.이전 실적)<개정 2017.7.10.>
- ④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특수교사는 우선 전보할 수 있다. (2010.3.1.이후, 2018.2.28.이전 실적)<개정 2017.7.10.>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과 소속 학교의 장의 요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전보권자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1. 연구(실험·시범)학교 근무자로서 연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학교의 교감, 연구부장(연구부장이 없는 학교는 연구 주무)
 2. 정년퇴임을 1년 이내 앞둔 자
 3. 학교경영상 꼭 필요한 특수영역의 우수교사<신설 2011.10.24.>
 4. 다자녀교원(3자녀 이상) 중 미취학 아동이 있는 교감, 교사<신설 2018.7.17.>
- ⑥ 학교 간 전보는 <표 1>과 같은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실정에 따라 그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 ⑦ 교사는 '가', '나' 급지 간 계속 근무연한을 통산하여 1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 '나' 급지 만료자는 '다', '라' 급지에 전보한다.(단, 동일 지역 내의 다른 급지로의 전보는 불가하다.)<개정 2018.11.16.>
- ⑧ 교감의 급지 근무연한 만료자는 <표 1>에 준하여 전보한다.(단, 동일 지역 내의 다른 급지로의 전보는 불가하다.)<개정 2018.11.16.>
- ⑨ 장애 영역에 따라 전입하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교사의 장애(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사정상 타 학교 근무가 어려울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의견에 따라 장기 근무를 허용할 수 있다.
- ⑩ 익년도 급지 간 순환 전보 대상자는 학년 도중에 전보할 수 없다.



- ⑪ 매년 2월 말일 기준 만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교원의 경우 본인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생활근거지(1년 이상 거주), 배우자의 직장(1년 이상 재직) 또는 생활근거지(1년 이상 거주)로 이동시 해당지역 전보자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만 2세 미만 자녀에는 2월말 일까지의 출산예정 자녀를 포함한다. 단, 전보 서열 명부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한다.<개정 2011.10.24.><개정 2012.10.23.><개정 2018.7.17.>
 1. 자녀 수가 많은 교원
 2. 전보 서열 명부 고점자 순(인사관리기준 제15조 ①항)
 3. 2호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인사관리기준 제15조 ④항의 규정을 따른다.
- ⑫ 파견근무 확정자는 전보하지 아니한다. 다만, 만기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5.25.><개정 2017.7.10.>
- ⑬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과원이 발생한 경우 우선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7.7.10.>

제 15 조(전보 서열 명부 작성)

- ① 특수학교 교원이 전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점, 가산점을 합산하여 학교별로 남, 여를 통합하여 전보 서열 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7.7.10.>
- ② 경력점 평정은 최근 4년 간의 근무 기간 중 <표 1>의 인사 급지에 의거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하되, 1년 이상은 연 단위로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
 단, '나', '다' 급지 근무자의 초과 경력은 4년에 한하여 1년마다 1점을 가산하되 현임 학교 또는 시·군의 근속 초과 경력에 한한다. 타· 시도 전입자의 전임지 인사구역 급지 경력점은 본 도의 '가' 급지에 준하고, 초과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5.25.>
 휴직 기간 또는 파견 기간이 경력점 평정 기간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평정 기간 직전의 실제 근무 기간에서 이월하여 당해 평정 기간에 산입한다. 단, 도 단위 교육 행정, 연구, 연수, 수련 기관 파견 근무자의 파견 기간은 당해 학교 근무 경력으로 산입할 수 있다.(휴직·파견 기간 삽입 2015.3.1.이후 실적)<개정 2014.10.13.>

인사구역급지	가	나	다	라
1년간 경력점	6	7	8	9



- ③ 가산점은 <표 2>에 의거 최근 4년 간 현 인사구역에서 거양한 근무 실적에 한 하되 우수 조건을 포함한다. 단, 휴직기간 또는 파견 기간이 평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평정 기간 직전의 실제 근무기간에서 이월하여 당해 평정에 산입 한다.(휴직기간, 파견 기간 삽입은 2015.3.1. 이후 실적) <표 2> 가산점 평정표 중 근무 실적의 경력 계산은 학년도 기준으로 하되 근무실적 1, 3, 4, 5, 6, 7, 8호는 6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한다. 단, 교육청의 지정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와 교과전담교사 6개월 미만일 경우 월마다 0.1점을 인정한다. 정보화 관련 자격 및 한국사능력검정 자격은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인정하며<개정 2013.10.17., 2014.10.13., 2015.5.15.>, 수업명사 자격은 취득 후 10년간 가산점을 부여 한다.<개정 2016.5.25.><개정 2019.7.8.>
- ④ 전보 서열 명부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고순위자를 결정한다.
1. 현임교 장기 근무자
 2. 시·군 경력점 상위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개정 2017.7.10.>

제 16 조(교사교감의 전보)

- ① 교사, 교감의 전보는 서열 명부에 의거 고순위자 순으로 전보한다.
- ② 교육지원청 관내 급지 및 학교 간의 전보는 교육장이 행한다.
<신설 2016.5.25.>

제 17 조(교장의 순환 전보 및 희망 전보)

- 교장 전보는 학교 경영 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거 시행한다.
- ① 동일 학교 근무 1년 6개월 이상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② 급지 간 근속연한 만료자는 다른 급지에 전보한다.

제 18 조(교장의 전보의 유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1. 연구(실험·시범)학교 근무자로서 연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2. 정년퇴임 1년 이내인 자



제 19 조(교사초빙)

- ① 초빙교사 임용은 당해 학교 교사 총 정원의 20% 이내(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 50% 이내)로 한다.(단, 도서벽지학교 및 준벽지 학교는 제외하고, 교장공모제학교는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1.10.24., 2014.10.13.〉

- ② 특수학교 초빙교사 대상은 도교육청 단위로 한다.
- ③ 초빙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지역근무연한에 포함한다.
- ④ 위 사항 이외의 초빙교사 임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 20 조(교육전문직원의 전보)

특수교육 담당 교육전문직 전보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① 동일 근무처에서 1년 이상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한다.
- ② 당해 교육지원청 업무 추진과 인사 조직의 실정을 고려하여 전보한다.
- ③ 동일 근무처에서 5년 이상 동일 직위에서 근속한 자는 전보한다.(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은 3년으로 한다. 단, 2018.3.1.이후 실적)〈개정 2017.7.10.〉
단,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소속 기관장이 전보 유예를 신청하여 (본인의 희망서 첨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제 6 장 국·공립학교 및 사·도 간의 교류

제 21 조(국·공립학교 간의 교류)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국립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용하고, 공립 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교육감의 3배수 추천에 의거 국립학교장이 임용한다.

- ①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될 자의 급지 및 가산점 인정은 초등 인사관리 기준에 준하여 산정하고 희망지역의 전보 서열명부에 산입시킨다. 단, 근속연한 만기 근무자는 우선 임용할 수 있다.
- ② 국립학교 전입자 중 ‘가’ 급지 근무자는 ‘가’ 급지 근무 만료 전 2년 이상인 자 이어야 한다.〈개정 2013.10.17.〉

**제 22 조(타 시도 간의 교류)**

① 아래 표에 의거 서열 명부를 남·여 구분 없이 작성하여 고순위 순으로 교류한다.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1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개정 2018.7.17.><개정 2019.7.8.> ○ 다음 법률 해당자로서 전출 희망 사도에 가족(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이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부 별거 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2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 희망 사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 (장애인: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 기존 1순위인 전출 희망 사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는 이 항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0.3.1.자 까지 1순위로 본다.<개정 2019.7.8.> ○ 별거 부부 3년 이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희망 사도내에 별거 중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자 ○ 자녀 3명 이상 부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자녀 3명 이상 자 ○ 노부모 봉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사도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1년 이상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부 별거 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p>※ 부부 별거 기간이 같은 경우 노부모 봉양자 우선</p>
3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거 부부 3년 미만자 ○ 근무희망 (생활 연고자 포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부 별거 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② 교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우선 전보할 수 있다.

③ 동수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전출 희망지 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교원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전출을 명할 수 있다. 단, 일방전입을 요구하는 교육감이 별도의 일방전입 기준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해 내신자를 통보할 수 있다.

④ 전출 대상자 요건과 선정 순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3.10.17.>

제 23 조(교환(파견)근무)

① 교육의 지역 간, 기관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의 고충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 상호 1:1 동수 원칙으로 파견 근무토록 할 수 있다.

② 파견 요건 및 파견 대상자의 선정 등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부 칙 (2000. 12. 07. 초등 13060-2221호)

제 1 조(시행일)

이 인사관리기준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94. 2. 28.이전 특수학교 전출·입된 교감, 교사는 인사 급지 간 순환 전보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 조(시행안 예고)

전보 가산점 평정표 중 일부를 <표2>의 시행안과 같이 조정하여 200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29. 인사위 12100-282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시행안 예고)

제15조(전보 서열 명부 작성)제④항의 근무 성적점 반영 기간을 '최근 2년간'에서 '최근 1년간'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3학년도부터 시행함을 예고한다.

부 칙 (2002. 11. 23. 인사위 12100-294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4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3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표2> 연구 실적의 4. 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자에 교원 정보 활용 능력 인증자를 추가하고 해당자에게 가산점 0.5를 부여한다.

부 칙 (2003. 11. 18. 인사위 12110-307 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5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4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표2> 연구 실적의 4. 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자에게(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기술자격에 의한 정보화 관련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0.3을 부여한다.
- ② <표2> 연구 실적에 영어 능력 시험 성적을 추가하고 영어 능력 시험 성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가산점 0.3을 부여한다.
 - TOEFL 시험 성적 PBT 503이상, CBT 177이상
 - TOEIC 시험 성적 595이상
 - TEPS 시험 성적 498이상

부 칙 (2004. 11. 29. 인사위-324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6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5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제14조 제②항 <표 1>의 '인사 급지 및 근속연한'은 <붙임 1>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원의 인사구역 및 동일 직위 근속연한'으로 대체한다.
- ② 제15조 제②항의 인사구역 급지별 경력점은 <붙임 2>와 같이 한다.
- ③ 도 인사구역 급지 경력점은 최근 4년간의 근무 기간 중 <붙임 2>의 표와 같이 산출한다. 다만, '나, 다' 급지 근무자의 초과 경력은 4년에 한하여 1년마다 1점을 가산하되 현임 학교 또는 시·군의 근속 초과 경력에 한한다. 타· 시도 전입자의 전임지 인사구역 급지 경력점은 '시' 지역 이상은 본 도의 '가', 그 외 지역은 '나' 급지에 준하고, 초과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5. 11. 23. 인사위-2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1. 20. 인사위-26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8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7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교사·교감의 순환 및 희망전보에서 학교(급) 간의 전보는 <표 1>과 같이 동일 학교 근무 1년 6개월 이상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② 교장의 순환 및 희망전보에서 동일 학교 근무 1년 6개월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③ 제21조(타 시·도 간 교류)서열명부 작성 시에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자녀 3명 이상 부양자는 다음 표와 같이 2순위에 부여한다.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2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거 부부 3년 이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희망 사도내에 별거 중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자 ○ 자녀 3명 이상 부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자녀 3명 이상 자 ○ 노부모 봉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사도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부 별거 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 부부 별거 기간이 같은 경우 3자녀 부양자, 노부모 봉양자 순

부 칙 (2007. 11. 01. 인사위-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30. 인사위-1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03. 인사위-7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11학년도 시행안 예고)

2010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① 제21조(타 시·도간 교류) ①항의 표 1순위는 아래표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1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 희망 시도내에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1급 장애인 부양 (장애인: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 다음 법률 해당자로서 전출 희망 시도에 가족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이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부 별거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② 제14조 ④항(신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특수교사는 우선 전보할 수 있다.(2010.3.1. 실적부터 적용)

③ 제15조③항<표2>가산점평정(표창): 직속기관장표창(0.7점). 2010.3.1.이후 실적부터

④ 제15조③항 <표2> 가산점평정(근무실적): 특수교육지원센터근무 (1년마다 2.0점), 2010.3.1.이후 실적부터

⑤ 제15조③항 <표2> 가산점평정(근무실적): 학습지도연구대회 도대회 입상자(0.75점) 2010.3.1.이후 실적부터

부 칙 (2010. 11. 04. 인사위-10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12학년도 시행안 예고)

2011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① 제15조(전보 서열 명부 작성) ③항 <표2> 가산점 평정표(특수)는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종별	평정대상	가산점	적용대상	비고
표창	1. ~ 2. (현행과 같음) 3. 학교과제 해결 및 직접 원아를 지도한 실적이 인정되는 타 부처 장관 표창, 2011.3.1.이후 실적	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근무실적	1. ~ 3. (현행과 같음) 4. 교육방송평생(사회)교육, 기초학력책임지도,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역 중심학교, 지역 교육청 지정 협력학교 근무자, 2011.3.1.이후 실적	0.2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연구실적	1. ~ 4. (현행과 같음) 5. 영어능력 시험(유효 기간 이내) ○ TOEFL 시험성적 CBT 177, IBT 62이상 ○ TOEIC 시험성적 595이상 ○ TEPS 시험성적 498이상 ○ 초등(특수)교사 영어말하기 능력인증 취득자, 2011.3.1.이후 적용	0.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② 제22조(시·도 간 교류) ①항의 표는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종별	대상자	순위별 결정기준
1 순위	○ 전출 희망 사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1급 장애인 부양(장애인: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순위	○ (현행과 같음) ○ 노부모 봉양자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사도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1년 이상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현행과 같음)

부 칙 (2011. 1. 31. 인사위-2208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24. 인사위-5109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23. 인사위-23913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0. 17. 인사위-761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13. 인사위-4024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5. 15. 인사위-2015-1714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5. 25. 인사위-2016-18630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0. 인사위-2017-02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17. 인사위-2018-03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16. 인사위-2018-04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8. 인사위-2019-05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7. 13. 인사위-2020-06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 1>

인사구역 및 동일 직위 근속연한

급 지	인 사 구 역		동 일 직 위		근 무 연 한		
	교장인사 구 역	교감, 교사 인사구역	동일교 근속연한		동일 급지별 근속연한		
			교장	교감, 교사	교장	교감	교사
가	경남헤림학교 창원천광학교	창원, 마산 진주시 경남헤림학교 창원천광학교	4년	5년	6년	8년	10년
나	진주해광학교 김해은혜학교	진해 (웅천, 웅동지역제외) 사천시(동) 김해시(동) 양산시(동) 진주해광학교 김해은혜학교	4년	5년	8년	10년	12년
다	의령은광학교 양산희망학교	진해(웅천, 웅동지역) 통영시(동) 사천시(면) 김해시(면) 양산시(면, 웅상지역)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의령은광학교 양산희망학교	4년	5년			
라	통영잠포학교 거창나래학교	통영시(면)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통영잠포학교 거창나래학교	4년	5년			

○ 「면」은 「읍」지역을 포함한다.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인사구역 및 인사급지를 적용한다.
<신설 2011.10.24.>

○ 교명변경 : 경남은혜학교 → 김해은혜학교(2017.3.1. 시행)
 경남은광학교 → 의령은광학교(2021.3.1. 시행)



종별	평정대상	가산점	적용대상	비고
	5. 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자(임용전 자격취득 포함) ○ 기술사, 기사(1,2급), 기능장, 기능사(1,2급) ○ 워드프로세서(1,2,3급, 단일 등급) ○ 컴퓨터활용능력(1,2,3급) ○ 정보활용능력인증 자격증취득자	0.3	전교원	택일 적용
연구실적	6. 영어능력 시험(유효 기간 이내) ○ TOEFL 시험성적 CBT 177, IBT 62이상 ○ TOEIC 시험성적 595이상 ○ TEPS(만점990점) 시험성적 498이상, TEPS(만점600점) 시험성적 267이상 ○ 초등(특수)교사 영어말하기능력인증 취득자 (2011.3.1.이후 적용, 2019.2.28. 이전) ○ ESPT 일반 3급 이상(2019.3.1. 이후 실적) ○ 영어교사 TEE 인증교사(취득한 재직학교 실적 1회에 한함, 2012.3.1.이후 실적)	0.3	전교원	택일 적용 〈신설 2011.10.24.〉 〈개정 2019.7.8.〉
	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임용전 자격취득 포함)	0.3		〈신설 2012.10.23.〉
	8. 수업 명사(취득 후 10년간)	1.0		〈신설 2016.5.25.〉
우우조건	1. 국가유공자와 동 부양자(배우자, 직접 부양하는 자녀와 그 배우자), 순직한 교육공무원의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1.0		택일 적용 〈개정 2011.10.24.〉 〈개정 2017.7.10.〉 〈개정 2019.7.8.〉
	2. 부부교원(전문직 포함)은 배우자가 근무하는 교육 지원청	0.5		
	3. 부모(배우자 부모포함)를 인사 당해 학년도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하여 직접 봉양하고 있는 자	0.5	전교원	
	4. 장애인(1년 이상 장애증명소지자)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중 장애인(장애 증명소지자)을 인사 당해 학년도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하여 직접 부양하고 있는 자	1.0		
	5. 55세 이상 교사	1.0	전교사	〈개정 2019.7.8.〉
	6. 자녀가 3명 이상인 교사	1.0	전교사	〈개정 2012.10.23.〉

보 건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제 법규에 의한 보건교사의 신규 채용, 전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범위)

- ① 이 기준은 본 도내 초·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에 적용한다.
- ②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원칙에 의하여 시·군의 인사 관리 방침을 수립 시행하며 통합 시·군의 경우 읍·면·동 간의 순환 전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제 3 조(전보의 시기)

정기 전보는 매년 3월 1일 자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비정기 전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최저 근무연한 이내 일지라도 전보할 수 있다.
 - 단, 5, 6, 7, 8호는 전보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8호는 본인이 요청할 경우 인사권자 소속 인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10호는 본인의 희망과 전보권자의 승인에 의하며, 3호 해당자로 전보된 자는 2년 이내 전 근무지에 가급적 전보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5.25.><개정 2019.7.8.>
1. 정원의 변경, 승진, 강임의 경우
2. 직위 해제 후 복직된 자
3. 징계 처분을 받은 자
4. 감사 결과 인사 조치 지시된 자
5. 당해 학교에 재직 시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6.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 단, 이 경우 학교장은 전보 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7. 교육공무원법 제 10조의3 제①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8. 기타 인사 쇄신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9. 전보권자를 달리하는 경우(시·군 관내 전보 제외)
 10.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1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② ①항 2~8호 해당자는 비경합지로 전보한다.
- ③ 학교장은 학교 운영상 교원의 전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직권 내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비경합지에 내신하여야 한다.

제 5 조(인사구역 및 근속연한)

동일 시·군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생활 근거지 및 희망지 전보로 교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인사구역 및 근무연한을 정하여 순환 전보를 실시한다.

제 6 조(전보 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

전보 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은 정기 전보일 전일로 하며 전보 연한의 계산에서 1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0.24.>

제 2 장 신규 교사의 배정과 임용

제 7 조(신규 보건교사의 배정과 임용)

- ① 보건교사의 신규 임용 후보자 선정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본 도 보건교사 임용 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하여 가급적 생활 근거지에 배정하고
- ② 초·중학교 보건교사의 신규 임용은 교육감이 배정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장이 임용한다.
- ③ 고등학교 보건교사의 신규 임용은 본 도 보건교사 임용 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한 고등학교 보건교사 희망자를 교육감이 임용한다.
단, 초·중학교 보건교사로서 고등학교 보건교사로 전보를 희망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 한한다.



제 8 조(배치)

신규로 임용되는 자는 본 도 인사구역의 ‘가’, ‘나’ 급지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단, 전입 희망자가 정원 충원에 미달하거나 학기 도중 결원 보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초·중·고등학교 간 전보

제 9 조(초·중등학교 급간 전보)

초·중·고등학교의 급간 전보는 교육감이 시행한다.

단, 특별한 시행 사항이 없고, 경합이 있을 때에는 교육경력이 많은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7.7.10.>

제 4 장 전 보

제 10 조(인사구역 및 근속연한)

- ① 인사구역 및 근속연한은 <표 1>과 같다.
- ② 초·중등학교 간 전보의 경우 급간 전보 전 ‘가’, ‘나’ 급지별 근무연한은 통산한다.
- ③ ‘가’, ‘나’ 급지 내 도서·벽지학교, 국립학교, 특수학교 근무 기간은 당해 급지별 근무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정기 전보)

- ① 동일 시·군내 학교 간의 전보는 1년 이상 5년의 범위 내에서 <표 1>과 같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실정에 따라 그 대상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가’ 급지에서 계속 8년, ‘나’ 급지에서 계속 10년(마산지역 8년) 근무한 자는 다른 급지로 전보한다.(단, 동일 지역 내의 다른 급지로의 전보는 불가하다.)
단, 중등학교 보건교사로서 중등학교 간 전보가 불가할 경우에는 ‘다’, ‘라’ 급지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학교 급간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8.11.16.>



- ③ 동일 인사구역 급지 내 전출입 소요 근무연한은 1년으로 하며 ‘가’ 급지 전입 소요 근무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단, 정원 충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근무연한 미만자도 전입 시킬 수 있다.<2015.3.1. 이후 삭제>
- ④ 파견근무 확정자는 전보하지 아니한다. 다만, 만기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5.25.><개정 2017.7.10.>

제 12 조(전보 서열 명부 작성)

- ① 보건교사의 시·군 간 전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점, 가산점을 합산하여 초·중등학교별로 전보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선순위 순으로 전보한다. 단, 특수학교는 중등학교에 포함한다.<개정 2017.7.10.>
- ② 경력점은 최근 4년간의 근무기간(‘가’, ‘나’ 급지 동일 시·군내 고등학교 전보의 경우는 현임교 근무 기간) 중, <표 1>의 급지에 의거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한다. 단, ‘나’, ‘다’ 급지 근무자의 초과 경력은 4년에 한하여 1년마다 1점을 가산한다. 타 시·도 전입자의 전입지 인사구역 급지 경력점은 본 도의 ‘가’ 급지에 준하고, 초과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개정 2016.5.25.>

휴직 기간 또는 파견 기간이 경력점 평정 기간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평정 기간 직전의 실제 근무 기간에서 이월하여 당해 평정 기간에 산입한다. 단, 도 단위 교육행정, 연구 연수, 수련 기관 파견 근무자의 파견 기간은 당해 학교 근무 경력으로 산입할 수 있다.(휴직기간, 파견기간 삽입은 2015.3.1.이후 실적)
<개정 2014.10.13.>

경력점 \ 급 지	가	나	다	라
1년간	6	7	8	9

- ③ 인사구역 급지에 대한 경력점은 최근 4년에 한하여 연단위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
- ④ 가산점은 <표 2>에 의거 최근 4년간 현 근무 시·군(‘가’, ‘나’ 급지 동일 시·군내 고등학교 전보의 경우는 현임교 근무 기간)에서 거양한 표창과 실적 그리고 우수 조건을 대상으로 한다. 단, 정보화 관련 자격 및 한국사능력검정 자격은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인정한다.



단, 휴직기간 또는 파견 기간이 평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평정 기간 직전의 실제 근무기간에서 이월하여 당해 평정에 산입한다.(휴직기간, 파견 기간 삽입은 2015.3.1. 이후 실적)<개정 2014.10.13., 2015.5.15.>

- ⑤ 전보 서열 명부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경력점 상위자
 2. 생년월일이 빠른 자<개정 2017.7.10.>
- ⑥ 전보 서열 명부는 1년간 유효하며 도중에 시·군 관내 전보된 자와 전보 포기자는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 13 조[전보의 우선]

- ① 보건교사 정원이 감축된 경우는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우선 전보할 수 있다.
- ② 매년 2월 말일 기준 만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교원의 경우 본인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생활근거지(1년 이상 거주), 배우자의 직장(1년 이상 재직) 또는 생활근거지(1년 이상 거주)로 이동시 해당지역 전보자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만 2세 미만 자녀에는 2월말 일까지의 출산예정 자녀를 포함한다. 단, 전보 서열 명부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개정 2011.10.24., 2012.10.23., 2018.7.17.>
 1. 자녀 수가 많은 교원
 2. 전보 서열 명부 고점자 순(인사관리기준 제12조 ①항)
 3. 2호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인사관리기준 제12조 ⑤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 14 조[전보의 유예]

근무연한이 만기된 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과 소속 교육장의 요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전보권자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1.10.24.>

1. 체육, 보건, 급식에 관한 연구·시범·실험학교 근무자로서 연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학교의 보건교사
2. 정년퇴직 1년 이내인 자
3. 다자녀교원(3자녀 이상) 중 미취학 아동이 있는 교감, 교사<신설 2018.7.17.>



제 5 장 국·공립학교 및 시도 간의 교류

제 15 조(국·공립학교 간의 교류)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국립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용하고,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교육감의 3배수 추천에 의거 국립학교장이 임용한다.

- ①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될 자의 급지 및 가산점 인정은 초등 인사관리기준에 준하여 산정하고 희망지역의 전보 서열명부에 산입시킨다. 단, 근속연한 만기 근무자는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3.10.17.>
- ② 국립학교 전입자 중 ‘가’, ‘나’ 급지 근무자는 ‘가’, ‘나’ 급지 근무 만료 전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제 16 조 (타 시도 간의 교류)

- ① 아래 표에 의거 서열 명부를 남·여 구분 없이 작성하여 고순위 순으로 교류한다.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1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개정 2018.7.17.><개정 2019.7.8.> ○ 다음 법률 해당자로서 전출 희망 시도에 가족(배우자, 1대의 직계존·비속)이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부 별거 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2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 희망 시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장애인: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 기존 1순위인 전출 희망 시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는 이 항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0.3.1.자 까지 1순위로 본다.<개정 2019.7.8.> ○ 별거 부부 3년 이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희망 시도내에 별거 중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자 ○ 자녀 3명 이상 부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자녀 3명 이상 자 ○ 노부모 봉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시도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1년 이상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부 별거 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 부부 별거 기간이 같은 경우 노부모 봉양자 우선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3 순위	○ 별거 부부 3년 미만자 ○ 근무희망 (생활 연고자 포함)	1. 부부 별거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 ② 교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우선 전보할 수 있다.
- ③ 동수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전출 희망지 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교원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전출을 명할 수 있다. 단, 일방전입을 요구하는 교육감이 별도의 일방전입 기준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해 내신자를 통보할 수 있다.
- ④ 전출 대상자 요건과 선정 순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3.10.17.>

제 17 조(교환(파견)근무)

- ① 교육의 지역 간, 기관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의 고충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 상호 1:1 동수 원칙으로 교환(파견)근무토록 할 수 있다.
- ② 파견 요건 및 파견 대상자의 선정 등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부 칙 (2001. 11. 29. 인사위 12100-282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 조치)

- ① 이 기준 <표1> 인사구역 및 급지별 근무연한의 기산은 '97.3.1.부터로 한다.
- ② 본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초·중등 인사관리기준에 준한다.

제 3 조(2003학년도 시행안 예고) 생략

부 칙 (2002. 11. 23. 인사위 12100-294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 ① 이 기준 <표1> 인사구역 및 급지별 근무연한 [창원·마산·진주 : 10년, 진해(동)·사천 : 12년] 의 기산은 '97. 3. 1.부터로 한다.
- ② 이 기준 <표1> 인사구역 및 급지별 근무연한 [김해시(동)·양산시(동)] 의 기산은 '03. 3. 1.부터로 한다.

제 3 조(2004학년도 시행안 예고)

- <표2> 연구 실적의 4. 정보화 관련 취득자에 교원 정보 활용 능력 인증자를 추가하고 해당자에게 0.5점을 부여한다.

부 칙 (2003. 11. 18. 인사위 12110-307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5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4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국립학교, 특수학교 근무 기간은 당해 급지별 근속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제13조 ①항을 삭제한다.
- ③ 보건교사의 시·군 간 전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점, 근무 성적점, 가산점을 합산하여 초·중등학교 별로 전보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선순위 순으로 전보한다. 단, 특수학교는 고등학교에 포함한다.
- ④ <표2> 연구 실적의 4. 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자에게(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기술자격에 의한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0.3점을 부여한다.
- ⑤ <표2> 연구 실적에 영어 능력 시험 성적을 추가하고 영어 능력 시험 성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가산점 0.3점을 부여한다
 - TOEFL 시험성적 PBT 503이상, CBT 177이상
 - TOEIC 시험성적 595이상
 - TEPS 시험성적 498이상

부 칙 (2004. 11. 29. 인사위-324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1. 23. 인사위-2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1. 20. 인사위-26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8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7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제16조(타 시·도 간 교류)서열명부 작성 시에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자녀 3명 이상 부양자는 다음 표와 같이 2순위에 부여한다.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2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거 부부 3년 이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희망 사도내에 별거 중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자 ○ 자녀 3명 이상 부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자녀 3명 이상 자 ○ 노부모 봉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사도에 부부 중 한 사람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부 별거 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p>※ 부부 별거 기간이 같은 경우 3자녀 부양자, 노부모 봉양자 순</p>

부 칙 (2007. 11. 01. 인사위-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9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8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제11조(정기전보) ② ‘가’ 급지에서 계속 8년, ‘나’ 급지에서 계속 10년 근무한 자는 ‘다’, ‘라’ 급지로 전보한다. 단, 중등학교 보건교사로서 중등학교 간 전보가 불가할 경우에는 ‘다’, ‘라’ 급지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학교 급간 전보할 수 있다.



부 칙 (2008. 10. 30. 인사위-1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03. 인사위-7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11학년도 시행안 예고)

2010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① 제16조(타 시·도간 교류) ①항의 표 1순위는 아래 표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1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 희망 사·도내에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1급 장애인 부양 (장애인: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 다음 법률 해당자로서 전출 희망 사·도에 가족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이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부 별거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② 12조 ⑤항 <표 2> 가산점 평정표(표창)

- 학교과제 해결 및 직접 학생을 지도한 실적이 인정되는 타 부처 장관 표창 (1.0점), 2010.03.01. 실적부터 적용
- 직속기관장 표창(0.7점). 2010.03.01. 실적부터 적용



부 칙 (2010. 11. 04. 인사위-10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12학년도 시행안 예고)

2011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제12조(전보 서열 명부 작성) ⑤항 <표 2> 가산점 평정표는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종별	평 정 대 상	가산점	적용대상	비고
근무 실적	1. ~ 5. (현행과 같음) 4. 교육방송평생(사회)교육, 기초학력책임지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역 중심학교, 지역 교육청 지정 협력학교 근무자, 2011.3.1. 이후 실적	0.2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② 제16조(타 시·도 간 교류) ①항의 표는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종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1 순위	○ 전출 희망 사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1급 장애인 부양(장애인: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순위	○ (현행과 같음) ○ 노부모 봉양자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사도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1년 이상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현행과 같음)



부 칙 (2011. 1. 31. 인사위-2208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24. 인사위-5109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23. 인사위-23913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0. 17. 인사위-761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13. 인사위-4024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16학년도 시행안 예고)

2015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인사구역 및 금지연한은 <표 1>과 같다.
- ② 제11조(정기 전보) ② ‘가’ 금지에서 계속 8년, ‘나’ 금지에서 계속 10년 근무한 자는 다른 급지로 전보한다.



부 칙 (2015. 5. 15. 인사위-2015-1714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5. 25. 인사위-2016-18630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0. 인사위-2017-02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17. 인사위-2018-03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16. 인사위-2018-04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8. 인사위-2019-05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22학년도 시행안 예고)

2020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2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① 제 10 조(인사구역 및 근속연한) ① 인사구역 및 근속연한은 <표 1>과 같다.

<표 1>

인사구역 및 근무연한

인사 구역		금지별 근무연한	
금지	인사 구역	전	후
가	창원, 진주시	8년	10년(2022.3.1. 전보부터 시행)
나	마산	8년	10년(2022.3.1. 전보부터 시행)

부 칙 (2020. 7. 13. 인사위-2020-06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 1〉

인사구역 및 근속연한

인 사 구 역		동일교 근속연한	금지별 근속연한
금지	인 사 구 역		
가	창원, 진주시	5년	8년 10년(2022.3.1. 전보부터 시행)
나	마산	5년	8년 10년(2022.3.1. 전보부터 시행)
	진해(웅천, 웅동 지역 제외), 사천시, 김해시(동), 양산시(동)	5년	10년
다	진해(웅동, 웅천지역), 통영시(동), 김해시(면), 밀양시, 양산시(면, 웅상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5년	
라	거제시, 통영시(면),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면」은 「읍」 지역을 포함한다.	5년	

※ 마산지역 인사금지 변경: '가' 금지(2017.2.28.이전) → '나' 금지(2017.3.1.이후)
〈개정 2016.5.25.〉

※ 금지별 근무연한(2022.3.1. 전보부터 시행)

• '가' 금지: 창원, 진주시 - 10년

• '나' 금지: 마산 - 10년

〈개정 2019.7.8.〉



<표 2>

가산점 평정표

종 별	평 정 대 상	가산점	비 고
표 창	1. 교육감 표창,(모범공무원 표창 포함) 이상	1.0	4년간 2회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2. 교육장 표창	0.7	
	3. 학교과제 해결 및 직접 학생을 지도한 실적이 인정되는 타 부처 장관 표창(2010.03.01이후 실적)	1.0	
	4. 직속기관장 표창(2010.3.1.이후 실적)	0.7	
근 무 실 적 (6개월 마다)	1. 도 단위 이상 지정 연구(실험시범)학교 근무자 (교육실습협력학교 포함. 2015.3.1.이후 실적) - 2015.2.28.이전 실적 0.5	0.3	4년간 누가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 7호는 2019.3.1.이후 실적부터 중복가능 <개정 2018.7.17.>
	2. 도 단위 이상에서 시상한 우수 학교 근무자	0.25	
	3. 최근 4년간 도서·벽지학교 근무자	0.5	
	4. 최근 4년간 특수학교 근무자	0.25	
	5. 2년간 보건교사 미배치교 순회 근무자 <개정 2016.5.25.>	0.5	
	6. 교육방송·평생(사회)교육, 기초학력책임지도, 다문화 가정자녀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역 중심학교, 교육지원청 지정 협력학교 근무자, 2011.3.1. 이후 실적 - 2015.2.28.이전 실적<개정 2013.10.17.>	0.125	
	7. 대규모 학교 근무실적<개정 2015.5.15.> ○ 36학급 이상 근무자 가산점(2년간) - 2014.3.1.실적부터(6개월 마다)	0.5	
	○ 36학급 이상, 42학급 이하 근무자 가산점	0.5	
	○ 43학급 이상 근무자 가산점 - 2016.3.1.실적부터(6개월 마다)(2년간)	0.75	
	- 2020.3.1.실적부터(6개월 마다)(2년간) <개정 2019.7.8.>	1.0	
8. 청렴도향상에 기여한 자(조사기관에 신고하여 금품수수 10만원 이상, 공금횡령·유용 100만원 이상 위반행위 발견에 기여한 경우)(현임교 1회만 인정) <신설 2015.5.15.><개정 2020.7.13.>	0.5	전교원 2016.3.1.실적부터 적용	



종 별	평 정 대 상	가산점	비 고
연 구 실 적	1. 전국 단위 입상자	1.0	4년간 누가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2. 도 단위 입상자	0.5	
	3. 개인작품 발표자 및 저서 집필자(2인 공저포함) - 2017.2.28.이전 실적 <개정 2016.5.25.>	0.5	
	- 2017.3.1.~2020.2.29. 실적 <개정 2019.7.8.>	0.2	
	4. 정보화 관련 자격증(임용전 자격취득 포함) ○ 기술사, 기사(1,2급), 기능장, 기능사(1,2급) ○ 워드프로세서(1,2,3급, 단일 등급) ○ 컴퓨터활용능력(1,2,3급) ○ 정보활용능력인증 자격증취득자	0.3	택일 적용
	5. 영어능력 시험(유효 기간 이내) ○ TOEFL 시험성적 CBT 177이상 ○ TOEIC 시험성적 595이상 ○ TEPS(만점 990점) 시험성적 498 이상, TEPS(만점 600점) 시험성적 267 이상 ○ 영어말하기능력 인증 취득자<신설 2015.5.15.> (경상남도교육감 인증, 2019.2.28. 이전) ○ ESPT 일반 3급 이상(2019.3.1. 이후 실적)	0.3	택일 적용 <개정 2019.7.8.>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임용전 자격취득 포함) <개정 2012.10.23.>	0.3		
우 우 조 건	1. 국가유공자와 동 부양자(배우자, 직접 부양하는 자녀와 그 배우자), 순직한 교육공무원의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1.0	택일 적용 <개정 2016.5.25.> <개정 2017.7.10.> <개정 2019.7.8.>
	2. 부부교원(전문직 포함)은 배우자가 근무하는 지역	0.5	
	3. 부모 (배우자 부모포함)를 인사 당해 학년도 말일 기준 으로 1년 이상 연속하여 직접 봉양하고 있는 자	0.5	
	4. 장애인(1년 이상 장애증명소지자)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중 장애인(장애증명소지자)을 인사 당해 학년도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하여 직접 부양하고 있는 자	1.0	
5. 만 55세 이상인 교사	1.0	<개정 2019.7.8.>	
6. 자녀가 3명 이상인 교사<개정 2012.10.23.>	1.0		

〈표 3〉

보건교사 경력점 조건표

(인사구역 금지 조건표)

구분 월	‘가’ 금지 (6점)	‘나’ 금지 (7점)	‘다’ 금지 (8점)	‘라’ 금지 (9점)	‘나. ‘다’ 금지 초과경력(1점)
1	0.5	0.58	0.67	0.75	0.08
2	1	1.17	1.33	1.5	0.17
3	1.5	1.75	2	2.25	0.25
4	2	2.33	2.67	3	0.33
5	2.5	2.92	3.33	3.75	0.42
6	3	3.50	4	4.5	0.50
7	3.5	4.08	4.67	5.25	0.58
8	4	4.67	5.33	6	0.67
9	4.5	5.25	6	6.75	0.75
10	5	5.83	6.67	7.5	0.83
11	5.5	6.42	7.33	8.25	0.92
12 (1년)	6	7	8	9	1

영양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제 법규에 의한 영양교사의 신규 임용, 전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범위)

- ① 이 기준은 본 도내 초·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에 적용한다.
- ②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기준에 의하여 시·군의 인사관리 방침을 수립 시행하며, 지역 내 1·2·3식 급식학교 간의 순환전보 및 통합 시·군의 경우 읍·면·동 간의 순환 전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동일 교육지원청 관내 초·중등 및 특수학교의 영양교사 전보는 통합하여 2016년 3월 1일부터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시행한다.
단, 2008년 3월 1일자 초·중등·특수 임용자는 제외하되 희망자는 포함한다.
<개정 2016.5.25.>

제 3 조(전보의 시기)

정기 전보는 매년 3월 1일 자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비정기 전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최저 근무연한 이내 일지라도 전보할 수 있다.
단, 5, 6, 7, 8호는 전보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8호는 본인이 요청할 경우 인사권자 소속 인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10호는 본인의 희망과 전보권자의 승인에 의하며, 3호 해당자로 전보된 자는 2년 이내 전 근무지에 가급적 전보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5.25.><개정 2019.7.8.>
 1. 정원의 변경, 승진, 강임의 경우
 2. 직위 해제 후 복직된 자
 3. 징계 처분을 받은 자
 4. 감사 결과 인사 조치 지시된 자



5. 당해 학교에 재직 시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6.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 단, 이 경우 학교장은 전보 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7. 교육공무원법 제 10조의3 제①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8. 기타 인사 쇄신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9. 전보권자를 달리하는 경우(시·군 관내 전보 제외)
10.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1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② ①항 2~8호 해당자는 비 경합지로 전보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 운영상 교원의 전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직권 내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비 경합지에 내신하여야 한다.

제 5 조(인사구역 및 근속연한)

〈표 1〉과 같이 인사구역 및 근속연한을 정하여 순환 전보를 실시한다.〈개정 2016.5.25.〉

제 6 조(전보 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

전보 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은 정기 전보일 전일로 하며, 전보 연한의 계산에서 1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0.24.〉

제 2 장 신규 교사의 배정과 임용

제 7 조(신규 영양교사의 배정과 임용)

① 영양교사의 신규 임용 후보자 선정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본 도 영양교사 임용 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하여 가급적 생활 근거지에 배정한다.

② 영양교사의 신규 임용은 교육감이 배정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장이 임용한다.

제 8 조(배치)

신규로 임용되는 자는 본 도 인사구역의 ‘가’, ‘나’ 급지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단, 전입 희망자가 정원 충원에 미달하거나 학기 도중 결원 보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전 보

제 9 조(인사구역 및 근속연한)

- ① 급지별 근속연한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인사구역은 <표 1>과 같다. 이 경우 현 근무 급지의 근속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근속연한 적용기준: 현 급지 임용일)
<개정 2016.5.25.>
1. '가' 급지 근무연한은 근속 8년으로 한다.
 2. '나' 급지 근무연한은 근속 10년으로 한다.<개정 2016.5.25.>
 3. '다' 급지 근무연한은 근속 12년으로 한다.
 4. '가', '나' 급지 만기자는 다른 급지로 전보한다.<개정 2017.7.10.>
 5. 동일지역 '다' 급지 만기자는 다른 급지 또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한다.(단, 동일 지역 내의 다른 급지로의 전보는 불가하다)<개정 2017.7.10., 2018.7.17.>
- ② 1일 2식 및 3식을 급식하는 학교의 근무연한은 2년으로 하고, 당해 급지에서 1회에 한하여 근무할 수 있다. 단,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동일교에서 2년간 전보 유예가 가능하고, 당해 급지에서 2회 이상 근무할 수 있다.<개정 2019.7.8.>
- ③ 1일 2식 및 3식을 급식하는 학교의 영양교사 근무기간은 1회에 한하여 당해 급지의 통산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20.3.1. 이후 실적)
<개정 2011.1.31.><개정 2019.7.8.><개정 2020.7.13.>
1. 1일 3식 학교 근무자 급지 통산 연한 미산입: 2010.3.1. 이후 실적부터
 2. 1일 2식 학교 근무자 급지 통산 연한 미산입: 2012.3.1. 이후 실적부터

제 10 조(정기 전보)

- ① 정기전보는 동일교 근무연한은 4년으로 하고, 현임교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② 유예자 및 급지 만기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전보한다.<개정 2016.5.25.>
1. 유예년수가 오래된 자
 2. 경력점, 가산점을 합산하여 점수가 낮은 자<개정 2017.7.10.>
 3. 생년월일이 늦은 자
- ③ 파견근무 확정자는 전보하지 아니한다. 다만, 만기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5.25.><개정 2017.7.10.>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동일교에 전보하지 않는다. 단, 현재 동일교에 근무 중인 자는 반드시 전보하며, 해당교사의 평정기간은 현임교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최근 4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9.11.20.>

1. 부부교원 및 직계존비속 관계의 교사
2. 자녀가 재학 중인 중·고등학교

제 11 조[전보 서열 명부 작성]

① 영양교사의 시·군 간 전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점, 가산점을 합산하여 초·중·고·특수학교 구분 없이 인사구역별로 통합 전보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선순위 순으로 전보한다.<개정 2016.5.25.><개정 2017.7.10.>

② 경력점은 최근 4년간의 근무기간 중, <표 1>의 급지에 의거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한다. 단, '나', '다' 급지 근무자의 초과 경력은 4년에 한하여 1년마다 1점을 가산한다. 타 시·도 전입자의 전입지 인사구역 급지 경력점은 본 도의 '가' 급지에 준한다. <개정 2016.5.25.>

급 지	가	나	다	라
경력점 1년간	6	7	8	9

※ 휴직 기간 또는 파견 기간이 경력점 평정 기간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평정 기간 직전의 실제 근무 기간에서 이월하여 당해 평정 기간에 산입한다.

단, 도 단위 교육행정, 연구, 연수, 수련 기관 파견 근무자의 파견 기간은 당해 학교 근무 경력으로 산입할 수 있다.(2017.3.1.이후 휴직, 파견자부터 적용)
<개정 2016.5.25.>

③ 인사구역 급지에 대한 경력점은 최근 4년에 한하며 연단위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은 월단위로 계산하고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

④ 가산점은 <표 2>에 의거 최근 4년간 현 인사구역에서 거양한 표창과 실적 그리고 우수 조건을 대상으로 한다.

단, 휴직기간 또는 파견 기간이 평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평정 기간 직전의 실제 근무기간에서 이월하여 당해 평정에 산입한다.

(2017.3.1.이후 휴직, 파견자부터 적용)<개정 2016.5.25.>



- ⑤ 전보 서열 명부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인사구역 급지에 대한 경력점 상위자
 2. 생년월일이 빠른 자<개정 2017.7.10.>
- ⑥ 전보 서열 명부는 1년간 유효하며, 도중에 시·군 관내 전보된 자는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 12 조(전보의 특례)

- ① 영양교사 정원이 감축된 경우는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다음 순위에 의하여 우선 전보한다.<개정 2016.5.25.>
1. 전보내신자 중 총점이 높은 자
 2. 해당 인사구역 장기 근무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 ② 매년 2월 말일 기준, 만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교원의 경우 본인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생활근거지(1년 이상 거주), 배우자의 직장(1년 이상 재직) 또는 생활근거지(1년 이상 거주)로 이동시 해당지역 전보자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단, 전보 서열 명부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 <신설 2011.10.24. 초등><신설 2014.3.1. 중등><개정 2018.7.17.>
1. 자녀 수가 많은 교원
 2. 전보 서열 명부 고점자 순(인사관리기준 제11조 ①항)
 3. 2호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인사관리기준 제 11조 ⑤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 13 조(전보의 유예)

- ① 지역 근무연한이 만기된 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과 소속 교육장의 요청에 따라 전보권자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 <개정 2016.5.25.>
1. 체육, 보건, 급식에 관한 연구·시범·실험학교 주무교사로서 연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학교의 영양교사<개정 2016.5.25.>
 2. 정년퇴직 1년 이내인 자
 3. 다자녀교원(3자녀 이상) 중 미취학 아동이 있는 교사<신설 2018.7.17.>
- ② 급지 만기자가 전보할 수 없을 경우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6.5.25.>



제 4 장 국·공립학교 및 시도 간의 교류

제 14 조(국·공립학교 간의 교류)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국립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우선 임용하고,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교육감의 3배수 추천에 의거 국립학교장이 임용한다. 단, '가', '나' 급지 근무자는 '가', '나' 급지 근무 만료 전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제 15 조(타 시도 간의 교류)

① 아래 표에 의거 서열 명부를 남·여 구분 없이 작성하여 고 순위 순으로 교류한다.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1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개정 2018.7.17.><개정 2019.7.8.> ○ 국가유공자 등 및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 전출희망 시·도에 부양하여야 할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가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부양해 줄 가족이 전출희망 시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1. 부부 별거 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 빠른 자 * 부양자, 부양해야 하는 자: 배우자, 1대의 존·비속 <개정 2016.5.25.>
2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 희망 시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 (장애인: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 기존 1순위인 전출 희망 시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는 이 항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0.3.1.자 까지 1순위로 본다.<개정 2019.7.8.> ○ 자녀 3인 이상 부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자녀 3명 이상 자 ○ 노부모 봉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시도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1년 이상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 별거 부부 3년 이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희망 시도에 3년 이상 별거 중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자 	1. 부부 별거 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 빠른 자 * 부부별거 기간이 같은 경우 노부모 봉양자 우선 <개정 2016.5.25.>
3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거 부부 3년 미만자 ○ 근무희망(생활 연고자 포함) 	1. 부부 별거 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 빠른 자



-
- ② 교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우선 전보할 수 있다.
 - ③ 동수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전출 희망지 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교원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전출을 명할 수 있다. 단, 일방전입을 요구하는 교육감이 별도의 일방전입 기준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해 내신자를 통보할 수 있다.



부 칙 (2007. 01. 19. 인사위-1334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 01. 인사위-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30. 인사위-1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03. 인사위-7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11학년도 시행안 예고)

2010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제10조 ① <표 1> 인사급지 구역의 진해시(웅동, 웅천지역), 김해시(면)지역을 '나' 급지로 적용. 2010.3.1.실적부터
- ② 제21조(타 시·도간 교류) ①항의 표 1순위는 아래 표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1 순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 희망 사도내에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1급 장애인 부양 (장애인: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 다음 법률 해당자로서 전출 희망 사도에 가족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이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부 별거 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 ③ 제10조③ 1일 3식을 급식하는 학교의 영양교사는 당해급지의 근속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2010.3.1. 이후 실적부터
- ④ 제12조 ⑤항 가산점 평정(표창): 직속기관장 표창(0.7점). 2010.3.1.이후 실적부터
- ⑤ 제12조 ⑤항 가산점 평정(근무실적): 2년간 공동급식학교(조리교) 근무자 (1년마다 0.3점). 2010.3.1. 이후 실적부터

부 칙 (2011. 1. 31. 인사위-2208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24. 인사위-5109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26. 인사위-14270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5. 15. 인사위-2015-1714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5. 25. 인사위-2016-18630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0. 인사위-2017-02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17. 인사위-2018-03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21학년도 시행안 예고)

2019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2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제11조(전보 서열 명부 작성) ④항 <표2> 가산점 평정(근무실적)은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종별	평정 대상	가산점	비고
근무 실적 (전)	3. 2년간 순회(겸무)교사(6개월마다)(2018.3.1.이후 실적) ※ 분교 순회근무 포함<개정 2017.7.10.>	0.5	최근 4년간 현 인사구역 실적
	8. 2년간 공동급식학교(조리교) 근무자(6개월마다) (2010.3.1. 이후 실적)	0.15	최근 4년간 현 인사구역 실적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근무 실적 (후)	3. 순회(겸무)교사(6개월마다)(2018.3.1.이후 실적) ※ 분교순회근무 포함<개정 2017.7.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공동급식학교(조리교) 근무자(6개월마다) (2010.3.1. 이후 실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부 칙 (2019. 7. 8. 인사위-2019-05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20. 인사위-2019-07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7. 13. 인사위-2020-06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 1〉

인사구역 및 근속연한

인 사 구 역		동일교 근속연한	금지별 근속연한
금지	인 사 구 역		
가	창원시(창원), 창원시(마산), 진주시	4 년	8 년
나	창원시(진해), 사천시, 김해시, 양산시(동)	4 년	10 년
다	창원시(진해구 웅동, 웅천지역, 2010.2.28.까지), 김해시(면, 2010.2.28.까지), 통영시(동), 밀양시, 양산시(면),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4 년	12년 (동일지역 근속연한)
라	거제시, 통영시(면),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면」은 「읍」 지역을 포함한다.	4 년	

- ‘가’, ‘나’ 금지 만기자는 다른 금지로 전보한다.<개정 2017.7.10.>
- 동일지역 ‘다’ 금지 만기자는 다른 금지 또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한다.
(단 동일 지역 내의 다른 금지로의 전보는 불가하다.)<개정 2017.7.10., 2018.7.17.>
- ‘라’ 금지 근속연한은 삭제한다.(2018.3.1.이후)<개정 2017.7.10.>

<표 2>

가산점 평정표

종별	평정대상	가산점	비고
표 창	1. 교육감 표창 이상(타 부처 장관 표창 포함)<개정 2016.5.25.>	1.0	최근 4년간 현 인사구역 실적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2. 교육장 표창	0.7	
	3. 직속기관장 표창(2010.3.1. 이후 실적)	0.7	
	4. 교육감상, 타부처 장관상(2021.3.1. 이후 실적)<신설 2020.7.13.>	0.5	
근 무 실 적	1. 1일3식 학교 근무자(1개월마다)<개정 2016.5.25.>	0.25	최근 4년간 현 인사구역 실적
	2. 1일2식 학교 근무자(1개월마다)<개정 2016.5.25.>	0.125	
	3. 2년간 순회(겸무)교사(6개월마다)(2018.3.1.이후 실적) ※ 분교순회근무 포함<개정 2017.7.10.> (2021.3.1. 전보부터 4년간 실적 적용)<개정 2018.7.17.>	0.5	
	4. 도서·벽지학교 근무자(6개월마다)	0.5	
	5. 도 단위 이상에서 시상한 우수 학교 근무자(6개월마다)<개정 2016.5.25.>	0.5	
	6. 도 단위 이상 지정 연구(실험시범)학교 및 교육실습 학교 근무자(6개월마다) <개정 2016.5.25.>	0.25	
	7. 2년간 순회(겸무)교사(6개월마다)(2018.2.28.까지 실적) ※ 분교순회근무 포함<개정 2017.7.10.>	0.5	
	8. 2년간 공동급식학교(조리교) 근무자(6개월마다)(2010.3.1. 이후 실적) <개정 2016.5.25.>(2021.3.1. 전보부터 4년간 실적 적용)<개정 2018.7.17.>	0.15	
	9. 교육방송·평생(사회)교육, 기초학력책임지도, 다문화가정자녀교육, 교육 과정운영 지역중심학교, 지역교육청 지정 협력학교 근무자(6개월마다)(2011.3.1. 이후 실적부터 2017.2.28까지 실적)<개정 2016.5.25.>	0.125	
	10. 2년간 대규모학교 근무실적(6개월마다)<신설 2017.7.10.> ○ 36학급 이상 42학급 이하 근무자(2018.3.1.이후 실적) ○ 43학급 이상 근무자(2018.3.1.이후 실적)	0.5 0.75	
	11. 청렴도향상에 기여한 자(조사기관에 신고하여 금품수수 10만원 이상, 공금횡령· 유용 100만원 이상 위반행위 발견에 기여한 경우)(현임교 1회만 인정)<신설 2015.5.15.><개정 2020.7.13.>	0.5	
연 구 실 적	1. 전국 단위 입상자	1.0	최근 4년간 현 인사구역 실적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2. 도 단위 입상자	0.5	
	3. 개인작품 발표자(2인 이내 저서발표자 포함) - 2017.2.28. 이전 실적<개정 2016.5.25.> - 2017.3.1.~2020.2.29. 실적<개정 2019.7.8.>	0.5 0.2	
	4. 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자(임용전 자격 취득 포함) ○ 기술사, 기사(1,2급), 기능장, 기능사(1,2급) ○ 워드프로세서(1,2,3급), 워드프로세스 단일등급, 컴퓨터활용능력(1,2,3급) ○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서취득자<개정 2016.5.25.>	0.3	택일 적용
	5. 영어능력 시험(유효 기간 이내) ○ TOEFL 시험성적 CBT 177, IBT 62이상 ○ TOEIC 시험성적 595이상 ○ TEPS(만점 990점) 시험성적 498 이상, TEPS(만점 600점) 시험성적 267 이상 ○ ESPT 일반 3급 이상(2019.3.1. 이후 실적)	0.3	택일 적용 <개정 2019.7.8.>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임용전 자격 취득 포함)<신설 2016.5.25.>	0.3	
우 우 조 건	1. 국가유공자와 동 부양자(배우자, 직접 부양하는 자녀와 그 배우자), 순직한 교육공무원의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1.0	택일 적용 <개정 2019.7.8.>
	2. 부부교원(전문직 포함)은 배우자가 근무하는 지역	0.5	
	3.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인사 당해 학년도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 하여 직접 봉양하고 있는 자<개정 2017.7.10.>	0.5	
	4. 장애자(1년이상 장애증명소지자)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장애인(장애증명소지자)을 인사 당해 학년도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 하여 직접 봉양하고 있는 자<개정 2016.5.25.><개정 2017.7.10.>	1.0	
	5. 만 55세 이상인 교사	0.5	
	6. 부양 자녀가 3명 이상인 교사	1.0	

교육전문직원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교육전문직원의 임용과 전보 및 전직에 관한 교육감 위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본 도의 초등·중등·유치원·특수교육전문직원에 적용한다.

제 2 장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제 3 조(임용 대상)

- ①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승진 임용은 동 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승진 임용 후보자 명부 등재 순위에 의하되, 승진 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제청)할 수 있다.
- ② 위 ①항의 승진 임용 후보자 명부 작성은 2년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 ③ 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5.1.28.><개정 2019.11.20.>
- ④ 장학사·교육연구사는 별도 시행계획에 따른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
- ⑤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을 희망하는 교(원)장, 교(원)감, 교(원)감 승진 후보자, 교육전문직원 경력자로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 4 조 (임용 절차)

- ① 임용 후보자 추천
- ② 전형
- ③ 임용 후보자 명부 작성
- ④ 임용



제 5 조(임용 후보자 추천)

- ① 임용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교육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단, 사립학교 교원의 추천권자는 법인으로 한다)
- ② 임용 후보자 추천은 투철한 교육관과 전문직원으로서의 인품과 자질을 갖추고 현장 교육 활동에 공헌한 책임자를 추천한다. 단, 초등은 교육전문직원에서 교감으로 전직한 자(교육전문직원 경력자)가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우선 추천할 수 있다.
- ③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①항 승진 임용의 제한자는 제외한다.
- ④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과 관련된 자는 제외한다.

제 6 조(전형)

- ① 교사의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 후보자 선발을 위한 공개전형은 별도 계획에 의거 시행하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형 방법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 ② 교(원)감 및 교(원)감 승진 후보자가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경우는 제7조 제⑤항의 명부 작성 방법에 의거 전형한다.

제 7 조(임용 후보자 명부 작성)

- ①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 후보자 명부는 초등, 중등, 유치원, 특수학교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구분 작성한다.(사립교원 별도 작성)
- ② 교육전문직원 공개 전형 합격자의 임용 후보자 명부는 전형 고 득점자 순으로 한다.
- ③ 전 학년도 공개 전형 합격자 중 미 임용자의 서열 명부는 별도로 한다.
- ④ 공개 전형 합격자로서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임용 기한(2년) 내에 임용되지 않은 자는 면접시험만 시행하고 별도로 명부를 작성한다.
- ⑤ 교(원)감 및 교(원)감 승진 후보자 중 전문직원 전직 희망자의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 후보자 명부는 별도의 전직전형 성적 결과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17.7.10.>
- ⑥ 교(원)감 및 교(원)감승진후보자 중 전문직원 전직 희망자의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 후보자 명부 작성에서의 동점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현직위에 장기근무한 자
3. 교육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제 8 조(교원의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

- ① 장학사·교육연구사는 임용 후보자 명부에 의하여 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한다.
- ② 제7조 제③항에 해당되는 자는 우선 임용할 수 있다. 단, 임용상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는 제외한다.
- ③ 과목별 교육전문직원 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임용에 필요한 과목별 순위에 의하여 전직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할 수 있다.

제 9 조(교장, 교감, 교감승진후보자, 전문직 경력자의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

- ① 교장과 교감의 교육전문직원 전직 임용은 전직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전직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할 수 있다.
단, 교장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교장·교감 자격증 소지자로서 승진 서열 내에 해당하는 자 중 교육전문직원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준하여 임용할 수 있다.
- ③ 교육전문직원 경력자의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은 ①항의 규정에 의하되, 초등의 경우 제5조의 교육전문직원 경력자를 우선 임용한다.

제 10 조(교원의 장학관, 교육연구관 임용)

교원의 장학관·교육연구관 임용은 제3조 제③항에 의거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다만, 교육전문직원을 거치지 않은 교원이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 임용시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포함한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선발하여 임용할 수 있다. 단 현직 교장과 원장은 공개 경쟁 시험을 제외한다.<개정 2015.1.28.>



제 11 조(국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전문직원 임용)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국립학교 교원이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코자 할 때는 국립학교장의 전직 동의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 임용 요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상응하는 교육전문직원에 우선 임용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하고자 할 때는 합당한 절차를 거쳐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제 3 장 교육전문직원의 전보

제 12 조(희망전보)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동일 근무처에서 1년 이상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희망과 근무 실적 및 인사 조직 형편에 따라 시행한다.

제 13 조(장기근속자 전보)

- ① 동일 근무처에서 4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보한다. 단, 2012.3.1.자 이후 임용한 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소속기관장이 본인의 희망서를 첨부하여 전보 유예를 신청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 ② 2018.3.1.자 이후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에 전입한 자 중 3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보한다.<신설 2018.3.1. 실적부터>

제 4 장 교육전문직원의 전직

제 14 조(전직)

- ① 교육전문직원에서 교원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자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내신을 받아 작성한 전직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를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2015.1.28.>



- ②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 다만, 2012.3.1이후 임용된 자는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경우 5년 이상,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자는 교감 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다.〈개정 2012.10.23.〉
- ③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제②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④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서의 전직은 장학(교육연구)사·장학(교육연구)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도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0.23.〉
- ⑤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하여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교육전문직원으로 재 전직할 수 있다. 다만, 도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서의 재 전직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23.〉

제 15 조(전직 후보자 명부 작성)

- ①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교(원)장 전직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의한다.
- ② 장학관·교육연구관의 교(원)장 전직과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교(원)감 전직은 다음을 기준으로 작성한 명부를 참고하여 임용한다.

항목	구분	배점	항목	구분	배점	비고
총교육 경 력	30년 이상	3	학위 (동등급직위)	박사	3	동점인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자
	28년 이상	2		석사	2	
	25년 이상	1				
현임지 경 력	4년 이상	6	연구실적 (동등급직위)	전국단위	2	
	3년 이상	5		도단위	1	
	2년 이상	4				
	1년 이상	3				
상응직 경 력	4년 이상	4	표창 (동등급직위)	국무총리 이상	3	
	3년 이상	3		장관	2	
	2년 이상	2		교육감	1	
	1년 이상	1				



제 16 조(교장 경력자의 우선 임용)

전직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 교장 경력이 있는 자는 우선 임용(제청)할 수 있다.

제 17 조(장기근속 전문직의 전직)

교육전문직원으로서 7년 이상 근속한 장학사·교육연구사는 교원으로 전직 임용(제청)한다. 단, 직급 승진자와 임용권자가 다른 경우는 예외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와 인사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는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부 칙 (2001. 11. 29. 인사위 12100-282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23. 인사위 12100-294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4년 시행안 예고)

2003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제3조제④항의 내용을 2004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교육전문직의 임용 대상자는 장학사·교육연구사는 전형 서류 제출일 현재 근무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최근 연도 근무 성적이 '우' 이상인 현직 교사(1년 이상 보직교사 경력자, 파견교사 포함)와 중등 사립교원으로서 교육전문직 공개 전형 합격한 자

부 칙 (2003. 11. 18. 인사위 12110-307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29. 인사위-324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6년도 시행 예고안)

2005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제3장 제13조의 내용을 2006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동일 근무처에서 4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소속 기관장이 본인의 희망서를 첨부하여 전보 유예를 신청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제 3 조(2008년도 시행 예고안)

2005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제4장 제14조 제②항의 내용을 2008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교육전문직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전문직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교육·교육전문직 경력 22년 이상인 교(원)감 경력자는 교(원)장의 직위로, 교육·교육전문직 경력 17년 이상인 자는 교(원)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다.

부 칙 (2005. 11. 23. 인사위-2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1. 20. 인사위-26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 01. 인사위-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30. 인사위-1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03. 인사위-7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 04. 인사위-10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23. 인사위-23913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13. 인사위-4024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28. 인사위-2015-2877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5. 25. 인사위-2016-18630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0. 인사위-2017-02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17. 인사위-2018-03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8. 인사위-2019-05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20. 인사위-2019-07호)

제 1 조(시행일)

2020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① 제3조(임용 대상) ③항 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1]의 기준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9.11.20.>

부 칙 (2020. 7. 13. 인사위-2020-06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각종 서식



[서식1]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임용후보자 평정표

평정대상자	소 속		소지자격		전형위원회 위원장인				
	직 위		교육경력	년 월 일					
	성 명		성 별		추천자인				
	생년월일		최종학력						
평 정 항 목	평 정 요 소		배점	추천자의견			평 정 점		비고
				상	중	하	추 천 자	전형위원회	
전문직 으로서의 자질	1	교 직 관	3	3	2	1			
	2	품 성	3	3	2	1			
	3	책 임 성	3	3	2	1			
	4	협 동·봉사성	3	3	2	1			
	5	창 의 성	3	3	2	1			
전문직 으로서의 능력	6	교육과정 전문성	3	3	2	1			
	7	교육경영능력	3	3	2	1			
	8	지 도 력	3	3	2	1			
	9	사무관리능력	3	3	2	1			
	10	교육연구력	3	3	2	1			
계			30						
합 계									



[서식2]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임용후보자 명부

확인자 직 성명 인

작성자 직 성명 인

순위		소속	직위	성명	성별	총경력 (현직위)	소지 자격	평정점					합계	비고
								기본성적				자질 능력		
								정기	조정	근무 성적	경력점			
교육	연구													

※ 평정점의 기본 성적란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적용하여 기재



[서식3][별지 제 5호 서식]

연수성적평정표 (제31조 제2항 관련)									
1. 평정대상자									
○ 소속 :			○ 직위 :			○ 성명 :			
2. 교육성적 평정									
교육구분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성적	평정점				
자격연수									
직무연수									
직무연수									
직무연수									
계									
3. 연구대회 입상실적 평정									
대회 주관기관	대회명	입상일자	전국 규모			시·도 규모			평정점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계									
4. 학위 취득실적 평정									
석·박사 구분	직무관련 구분	학위명	학위 수여기관	학위 취득일	평정점				
석사	직무 관련								
	기타								
박사	직무 관련								
	기타								
5. 연수성적 평정점									
6. 평정자·확인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서명(인)					
평정자									
확인자									



[서식4][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2.11.6.〉

경 력 평 정 표						
1. 평정대상자						
• 소속 :		• 직위 :		• 성명 : (인)		
2. 경력평정						
경 력 별		근무처 직명	재직기간	재직 월/일수	월/일 평정점	평정점 합계
기 본 경 력	'가' 경력			월: 일:	월: 일:	
	'나' 경력			월: 일:	월: 일:	
	'다' 경력			월: 일:	월: 일:	
	소계				월: 일	
초 과 경 력	'가' 경력			월: 일:	월: 일:	
	'나' 경력			월: 일:	월: 일:	
	'다' 경력			월: 일:	월: 일:	
	소계				월: 일	
합계						
3. 평정자·확인자						
구 분	소속		직위	성명	서명(인)	
평 정 자						
확 인 자						



[서식6]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추천 조서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성 별		
소 속			직 위			소지자격
인 적 사	학 력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 교 • 대 학 • 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 사 • 교 감 • 교 장 • 전문직 		
표창 및 연구 실적	1. 표 창			2. 연구실적		
추천기관장 의 견						
20 . . . <div style="float: right; margin-top: 10px;"> ○○학교장(직인) ○○교육장(직인) </div>						

참고 자료



<참고 자료 1>

동일 시·군 지역 내 급지별 학교 명단

■ 초등(특수) 교감, 초등(특수) 교사

지역청명	급지	학교명	비고
창원 (진해구)	나	경화, 덕산, 도천, 진해중앙, 대야, 진해남산, 동부, 제황, 자은, 풍호, 석동, 장복, 장천, 진해냉천	
	다	웅천, 응동, 용원, 안청, 안골포, 진해신항	
통영	다	통영, 총렬, 유영, 총무, 두룡, 진남, 한려, 인평, 남포	
	라	용남, 원평, 산양, 도산, 광도, 죽림, 벽방, 원량, 사랑, 한산, 제석	
사천	나	삼천포(신수도분교), 문선, 노산, 대방, 용산, 남양, 대성	
	다	사천, 수양, 동성, 삼성, 용현, 정동, 축동, 곤양, 곤명, 서포, 사남	
양산	나	양산, 양주, 삼성, 신기, 북정, 중부, 삼량, 신양, 어곡	
	다	동산, 물금, 범어, 오봉, 서남, 황산, 성산, 원동(이천분교), 화제, 상북, 하북, 소토, 좌삼, 용연, 웅상, 덕계, 평산, 신명, 서창, 대운, 천성, 백동, 영천, 석산, 신주, 증산, 가남, 가양, 가촌, 금오초·중, 회야(2021.3.1.개교)	
김해	나	김해동광, 김해합성, 김해봉황, 김해활천, 김해삼성, 칠산, 삼계, 구봉, 김해내동, 김해외동, 삼방, 신어, 우암, 어방, 김해대곡, 경운, 임호, 영운, 봉명, 김해가야, 구산, 김해구지, 화정, 분성, 김해신명, 장유, 월산, 김해부곡, 주석, 삼문, 계동, 석봉, 능동, 김해신안, 덕정, 대청, 수남, 율하, 관동, 김해모산, 김해울산	
	다	진영대창, 진영대흥, 진영금병, 금산, 주촌, 진례, 대진, 이북, 안명, 한림, 생림, 이작, 금동, 용산, 대동, 대중, 대감, 진영중앙, 진영장등초·중(2021.3.1.개교)	



■ 보건교사

지역청명	급지	학교명	비고
창원 (진해구)	나	경화, 덕산, 도천, 진해중앙, 대야, 진해남산, 동부, 제황, 자은, 풍호, 석동, 장복, 장천, 진해냉천	
	다	웅천, 웅동, 용원, 안청, 안골포, 진해신항	
통영	다	통영, 총렬, 유영, 총무, 두룡, 진남, 한려, 인평, 남포	
	라	용남, 원평, 산양, 도산, 광도, 죽림, 벽방, 원량, 사랑, 한산, 제석	
양산	나	양산, 양주, 삼성, 신기, 북정, 중부, 삼량, 신양, 어곡	
	다	동산, 물금, 범어, 오봉, 서남, 황산, 성산, 원동(이천분교), 화제, 상북, 하북, 소토, 좌삼, 용연, 웅상, 덕계, 평산, 신명, 서창, 대운, 천성, 백동 영천, 석산, 신주, 증산, 가남, 가양, 가촌, 금오초·중, 회야(2021.3.1.개교)	
김해	나	김해동광, 김해합성, 김해봉황, 김해활천, 김해삼성, 칠산, 삼계, 구봉, 김해내동, 김해외동, 삼방, 신어, 우암, 어방, 김해대곡, 경운, 임호, 영운, 봉명, 김해가야, 구산, 김해구지, 화정, 분성, 김해신명, 장유, 월산, 김해부곡, 주석, 삼문, 계동, 석봉, 능동, 김해신안, 덕정, 대청, 수남, 율하, 관동, 김해모산, 김해율산	
	다	진영대창, 진영대흥, 진영금병, 금산, 주촌, 진례, 대진, 이북, 안명, 한림, 생림, 이작, 금동, 용산, 대동, 대중, 대감, 진영중앙, 진영장등초·중(2021.3.1.개교)	



■ 영양교사(초·중등)

지역청명	급지	학교명	비고
창원 (진해구)	나	경화초, 덕산초, 도천초, 진해중앙초, 대야초, 진해남산초, 동부초, 제황초, 자은초, 풍호초, 석동초, 장복초, 장천초, 진해냉천초, 진해중, 진해여중, 진해냉천중, 진해고	2010.3.1. 이후 진해구 전지역 나급지로 적용
	다	웅천초, 웅동초, 웅원초, 안청초, 안골포초, 진해신항초, 웅원중, 진해용원고, 진해특수학교, 웅천중(2021.3.1.개교)	
통영	다	통영초, 총렬초, 유영초, 총무초, 두룡초, 진남초, 한려초, 인평초, 남포초, 통영중, 총무중, 총무여중, 통영고, 총무고, 통영여고	
	라	용남초, 원평초, 산양초, 도산초, 광도초, 죽림초, 벽방초, 원량초, 사랑초, 한산초, 제석초, 통영잠포학교	
양산	나	양산초, 양주초, 삼성초, 신기초, 북정초, 중부초, 삼량초, 신양초, 어곡초, 웅상초, 덕계초, 평산초, 신명초, 서창초, 대운초, 천성초, 백동초, 양산중, 삼성중, 웅상중, 서창중, 양산고, 웅상고, 서창고, 회야(2021.3.1.개교)	
	다	동산초, 물금초, 범어초, 오봉초, 서남초, 황산초, 성산초, 화제초, 원동초(이천분교), 상북초, 하북초, 소토초, 좌삼초, 용연초, 영천초, 석산초, 신주초, 증산초, 가남초, 가양초, 가촌초, 금오초·중, 신주중, 범어중, 물금중, 물금고, 양산희망학교,	
김해	나	김해동광초, 김해합성초, 김해봉황초, 김해활천초, 김해삼성초, 칠산초, 삼계초, 구봉초, 김해내동초, 김해외동초, 삼방초, 신어초, 우암초, 어방초, 김해대곡초, 경운초, 임호초, 영운초, 봉명초, 김해가야초, 구산초, 김해구지초, 화정초, 분성초, 김해신명초, 장유초, 월산초, 김해부곡초, 주석초, 삼문초, 계동초, 석봉초, 능동초, 김해신안초, 덕정초, 대청초, 수남초, 율하초, 관동초, 김해중, 김해여중, 내동중, 신어중, 삼정중, 가야중, 봉명중, 활천중, 내덕중, 김해영운고, 김해삼방고, 김해임호고, 구산고, 김해건설공업고, 김해외국어고, 김해울하고, 김해은혜학교, 김해모산초, 김해대청고, 김해수남고, 김해울산초, 김해모산중, 김해삼문고	2010.3.1. 이후 김해 전지역 나급지로 적용
	다	진영대창초, 진영대흥초, 진영금병초, 금산초, 주촌초, 진례초, 대진초, 이북초, 안명초, 한림초, 생림초, 이작초, 금동초, 용산초, 대동초, 대중초, 대감초, 진영중앙초, 한얼중, 진영중, 진영고, 진영제일고, 진영장등초·중(2021.3.1.개교)	



〈참고 자료 2〉

타 시·군 내신조사서 희망지역 표기 자료

- 초등(사서·상담), 유치원, 특수, 보건 공통 -

순	시·군	희망지역	대상 학교	유치원
1	창원 (창원)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원남산, 남양, 남정, 성주, 대방, 대암, 동산, 사파, 삼정자, 토월, 용남, 안남, 안민, 창원상남, 외동, 창원신월 	토월, 창원남산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계, 명곡, 명도, 명서, 봉림, 사화, 상북, 용남, 용호, 창원, 창원한들, 평산, 중동, 소담, 대원, 내동, 반송, 용지, 유목, 양곡, 의창 	창원한별, 용호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방, 봉강, 화양, 자여, 북면(승산분교), 온천, 하천, 대산, 일동, 우암, 신등, 무동, 감계 	창원진달래
2	창원 (마산)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호, 합포, 산호, 양덕, 무학, 월영, 회원, 해운, 완월, 석전, 팔룡, 교방, 교동, 북성, 용마, 봉덕, 상남, 월성, 월포, 구암, 가포, 마산신월, 마산중앙, 내서, 합성, 가고파, 마산고운(2021.3.1.개교) 	한사랑 양덕솔빛 (2021.3.1.개원)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계, 호계, 상일, 광려, 안계, 종리, 감천, 전안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동, 진동, 하북, 구산(구서분교), 우산, 반동, 진전 	현동숲
3	창원 (진해)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천, 제황, 진해남산, 대야, 진해중앙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화, 동부, 석동, 덕산, 자은, 풍호, 장북, 장천, 진해냉천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웅천, 웅동, 안청, 용원, 안골포, 진해신항 	진해, 곰내
4	진주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진, 신진, 수정, 평거, 신안, 배영, 축석, 진주, 봉원, 봉곡, 수곡, 명석, 미천 	한울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전, 주약, 정촌, 가좌, 망경, 가람, 문산, 남강, 봉래, 내동, 예하, 관봉, 금곡, 집현, 대곡 	진주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동, 동진, 금성, 장재, 선학, 초전, 갈전, 무지개, 금산, 금호, 지수, 반성, 이반성, 진성, 사봉, 충무공 	진주누리
5	통영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도, 도산, 벽방, 용남, 원평, 유영, 제석, 죽림, 총렬, 총무, 통영 	통영, 광도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포, 두룡, 사랑, 산양, 원량, 인평, 진남, 한려, 한산 	
6	사천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천포, 문선, 노산, 대방, 용산, 남양, 대성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천, 수양, 동성, 삼성, 용현, 정동, 축동, 곤양, 곤명, 서포, 사남 	사천, 선진



순	시군	희망지역	대상 학교	유치원
7	김해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산, 김해봉황, 장유, 월산, 김해부곡, 주석, 삼문, 계동, 대청, 석봉, 능동, 김해신안, 덕정, 수남, 율하, 관동, 주촌, 김해모산, 김해울산 	장유 김해울하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영대창, 진영대흥, 금산, 진영금병, 진례, 대진, 한림, 이북, 안명, 생림, 이작, 진영중앙, 진영장등초·중(2021.3.1.개교) 	진영유 (2021.3.1. 개원)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합성, 구봉, 김해신명, 화정, 분성, 김해구지, 구산, 삼계, 김해내동, 봉명, 임호, 우암, 경운, 김해가야, 김해외동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동광, 김해활천, 김해삼성, 삼방, 신어, 어방, 영운, 김해대곡, 용산, 금동, 대동, 대감, 대중 	김해
8	밀양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양, 미리벌, 밀주, 산내, 태룡, 산내남명, 산동, 상동, 산외, 삼랑진, 송진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성, 예림, 수산, 초동, 상남, 무안, 청도, 부북, 사포, 송진 	밀양
9	거제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룡, 장평, 신현, 중곡, 거제중앙, 양지, 거제고현, 거제상동, 삼룡, 제산, 수월, 연초, 오비, 송정, 거제양정 	한아름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승포, 국산, 옥포, 진목, 아주, 내곡, 마전, 일운, 능포, 하청, 장목, 외포, 거제용소(2021.3.1.개교) 	거제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간, 거제, 동부(울포분교), 송덕, 오량, 사등, 기성, 칠천, 창호, 명사 	사등 (2021.3.1. 개원)
10	양산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산, 양주, 중부, 삼량, 신양, 신기, 상북, 삼성, 북정, 소토, 용연, 하북, 어곡, 좌삼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봉, 서남, 범어, 황산, 성산, 동산, 물금, 화제, 원동(이천분교), 석산, 증산, 신주, 가남, 가양, 가촌, 금오초·중 	양산 오봉 물금 (2021.3.1. 개원)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덕계, 영천, 서창, 천성, 평산, 백동, 웅상, 신명, 대운, 회야(2021.3.1.개교) 	
11	의령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령, 남산 	의령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례, 칠곡, 대의, 화정, 용덕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곡, 지정, 부림,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류, 낙서, 봉수분교, 유곡 	



순	시군	희망지역	대상 학교	유치원
12	함안	A	■ 가야, 아라, 중앙, 함안, 산인, 문암, 외암, 군북, 법수, 월촌	함안
		B	■ 호암, 칠원, 예곡, 유원, 칠서(이룡분교, 이령분교), 대산	
13	창녕	A	■ 동포, 남지, 영산, 부곡(학포분교), 길곡, 도천, 계창, 장마	
		B	■ 창녕, 명덕, 대지, 고암, 대합, 이방, 유어, 장천, 창녕성산	창녕
14	고성	A	■ 회화, 구만, 마암, 동해, 동광, 거류	
		B	■ 영오, 영현, 개천, 상리, 삼산, 하일, 하이	
		C	■ 고성, 대성, 철성, 울천, 대흥, 방산	고성
15	남해	A	■ 창선, 지족, 삼동, 이동, 상주, 미조	
		B	■ 남해, 해양, 설천, 고현, 도마, 남명, 성명	남해
16	하동	A	■ 진교, 고전, 양보, 궁항, 갈육, 진정, 노량	
		B	■ 하동, 화개(왕성분교), 악양, 쌍계	하동
		C	■ 옥종, 북천, 묵계(청암분교), 횡천, 적량	
17	산청	A	■ 산청, 단성, 신안, 덕산, 생비량, 단계, 도산	산청
		B	■ 생초, 차황, 금서	
		C	■ 오부, 삼장, 신천	
18	함양	A	■ 함양, 위성	천령
		B	■ 수동, 병곡, 지곡, 위림	
		C	■ 서상, 금반, 서하, 안의, 유림, 백전, 마천	
19	거창	A	■ 거창, 창남, 창동, 아림	거창
		B	■ 월천, 주상, 웅양, 고제	
		C	■ 남상, 남하, 신원	
		D	■ 가조, 가북	
		E	■ 마리, 위천, 북상	
20	합천	A	■ 합천, 삼가	합천
		B	■ 남정, 가회, 쌍백, 초계, 대양	
		C	■ 영전, 용주, 대병, 묘산, 적중, 쌍책	
		D	■ 봉산, 청덕, 덕곡분교, 야로, 합천가야	

2021.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발행일 : 2021. 10.



발행처 : 경상남도교육청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홈페이지 : www.gne.go.kr

인쇄처 : 문성인쇄사 ☎ 282-9922

